

단기 개인 훈련 보고서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송환 및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적 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 훈련)

2020. 4.

경 찰 청
조 용 석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1. 연구대상(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국제공조수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제1절 국제범죄와 국제공제수사	2
1. 국제범죄의 의의	
2. 국외도피 사범의 개관	
3. 국제공조수사의 개관	
4. 인터폴 개관	
제2절 국제공조수사 형태별 절차	7
1.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2.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공조수사	
3. 코리안데스크를 통한 국제공조수사	
4. 여권행정 제재(여권무효화)	

| 제3장 | 국외도피사범 등 현황 12

제1절 재외국민 현황 12

- 1. 재외국민 의의
- 2. 해외 출국자 및 재외국민 현황

제2절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현황 14

- 1. 연도별·범죄피해 유형별 현황
- 2. 국가별·범죄피해 유형별 현황
- 3. 주요 피해 사례

제3절 국내범죄자의 국외 도피 현황 17

- 1. 연도별 국외도피 현황
- 2. 국가별 국외도피 현황
- 3. 죄종별 국외도피 현황

제4절 국외도피 사범의 국내송환 실태 19

- 1. 연도별 국내송환 현황
- 2. 국가별 국내송환 현황
- 3. 범죄유형별 국내송환 현황
- 4.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방식

| 제4장 | 국제공조수사 사례 연구 21

제1절 필리핀과의 영사 관계 및 사건·사고 현황 21

- 1. 필리핀 국가 현황

2. 필리핀 거주 한국인(재외국민) 현황
3. 한국-필리핀間 영사 관계
4. 한국-필리핀間 형사사법공조조약
5. 필리핀내 한국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 현황
6. 필리핀의 형사 절차

제2절 국제공조수사 사례 분석 42

1. 최근 국제공조수사 사례 소개
2. 필리핀과 공조수사 사례
3. 최초의 인터폴과 합동검거 작전 사례

| 제5장 | 국제공조수사 관련 문제점 및 한계 : 필리핀 .. 51

제1절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필리핀 경찰의 협력도 51

1. 필리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의 적극성
2. 필리핀 경찰의 부패인식 수준
3.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제2절 필리핀 거주 한국인의 필리핀 경찰에 대한 신뢰도 56

1. 필리핀(세부) 경찰의 부패 정도
2. 필리핀(세부) 치안에 대한 체감 안전도
3. 셋업 범죄 주요 사례

제3절 경찰주재관(영사)와 코리안데스크의 운영상 문제점 ... 67

1. 경찰주재관(영사)의 역할 및 한계
2.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역할 및 한계

제4절 「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의 효과 분석 .. 71

1. 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 사업 현황
2. 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평가

| 제6장 |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78

제1절 협력국에 대한 지원 사업 방식의 다양화 78

제2절 코리안데스크의 전문성 제고 및 확대 82

1.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의 선발 기준 및 자격 요건 검토 필요
2. 코리안데스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3. 코리안데스크의 임무 및 역할 재협의
4. 코리안데스크 운영 국가 확대

| 제7장 | 결 론 88

참고문헌 91

부 록 92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배경 및 필요성)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해외 출국자 숫자는 2,600여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제화 추세이다. 범죄에 있어서도 매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국외도피 사범이 1천여 명¹⁾에 달하는 등 국제화 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송환은 매우 저조²⁾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외도피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수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우발적 범죄보다는 사기·횡령과 같은 계획 범죄자들에 의한 국외도피³⁾가 많아 국민의 피해가 상당하다. 이로 인하여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신속한 국내 송환 및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범죄자들이 주로 도피하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실태를 조사하고, 신속한 송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조수사에 있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2013년 254명, 2014년 350명, 2015년 434명, 2016년 616명 /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경찰청, 2017.8월.

2) 국외도피 및 송환 현황(2013~2017년) 총 2,182명 도피, 1,081명 국내송환

3) 범죄유형별(2013~2017년) : 사기 43.7%, 마약 6.1%, 폭력 5.2%, 횡령·배임 4.8% 順

1. 연구대상(연구범위)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송환 및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적 방안 강구를 위하여 다음의 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국외도피사범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주로 어느 나라로 도피하며, 도피범 가운데 얼마나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둘째,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형태는 무엇이며, 이론상·실무상 어떤 형태로 송환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실무상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이용하는 송환절차의 법적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하였다. 셋째, 국제공조수사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현재 필리핀 지역에 운영중인 코리안데스크의 실태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우선 국외도피사범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외교부의 ‘사건·사고 발생현황’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외교부에서 국가별로 사건·사고 현황을 안내해주는 ‘해외안전 여행’ 내 ‘필리핀 개황’ 등을 통해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및 국제공조수사 관련하여 한국 언론의 보도 자료 및 각종 학술 논문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밖에 국제규범, 필리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법령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외도피사범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현직 사건·사고 담당 영사,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영사협력원, 필리핀 세부 지역 한인 교민회, 필리핀 경찰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 제2장 | 국제공조수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국제범죄와 국제공조수사

1. 국제범죄의 의의

국제범죄는 어떤 나라의 국민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인이 자국민 또는 자국의 법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리고 범죄의 직접적인 실행 외에도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집행 등 형사사법단계에 있어서 국제적 관련성을 지닌 경우도 포함된다.⁴⁾

2. 국외도피 사범의 개관

가. 국외도피사범의 정의

국외도피사범이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형사처분 등을 피할 목적으로 범죄 직후, 수사 단계 또는 형 집행 중에 국외로 도주한 자국민을 의미한다.

나.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 확인 등을 요청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배서 발부를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주재관 등을 통하여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면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범죄인 인도법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외교경로(외교부)를 통하여 해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다. 둘째, 피의자가 현지법을 위반한 경우 등은 강제 추방 형식으로 국내 송환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 송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관서 경찰관이 도피국으로 출장을 가서 피의자를 호송한다. 둘째,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도피국에 파견 근무중인 경찰주재관이 직접 호송한다. 셋째, 도피국 경찰(또는 이민국 직원)이 직접 국내까지 호송해준

4) 안성훈 외, “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12월, 25면.

다. 넷째,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찰주재관이 도피국 경찰(또는 이민국 직원)의 협조를 구하여 국적기 항공기에 탑승시켜 입국시 검거하는 형태이다.

3. 국제공조수사의 개관

국제공조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형태로 나뉜다. 첫째,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이다.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회원국(190여개국)이 인터폴 현장과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 범죄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 등 일련의 수사 활동에 협력을 하는 것이다. 둘째,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공조수사다. 이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각 국가들 간에 체결된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근거로 각 국가의 법무부를 통해 국제범죄에 있어서 수사 활동을 협력하는 것이다. 이하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4. 인터폴 개관⁵⁾

가. 인터폴의 개념

인터폴을 공식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INTERPOL)이다. 1914년에 ‘국제형사경찰의회’가 최초로 모나코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시에 24개국 경찰관, 치안판사,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범죄인 체포 및 인도 절차 등을 논의하는데 이를 인터폴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인터폴은 현재 19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제 33차 총회, 베네수엘라)에 인터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인터폴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수사권을 지닌 ‘국제경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인터폴 현장과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 교환 및 범죄자 체포·인도 등 회원국간의 상호협력 활동을 하는 것이다.

5)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매뉴얼”(경찰청, 2017.8월) 16-20면

▶ 인터폴 헌장(Constitution) ◀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제2조 본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군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형사경찰 당국간에 최대한 협조를 보장, 증진시킨다.

제3조 본 기구는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간섭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폴 엠블럼은 1950년부터 사용· 가운데 '지구' 는 인터폴의 활동 반경이 세계임을 의미· '올리브 가지' 는 평화를 상징· '칼' 은 경찰의 법집행을 상징· '저울' 은 정의를 상징
--	--

나. 인터폴의 조직

인터폴은 크게 ①총회(General Assembly), ②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③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 ④국가중앙사무국(NCB : National Central Bureau)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총회(General Assembly)는 인터폴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사무총국에서 작성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각종 결의안 채택, 필요시 각 회원국에게 특정한 임무를 권고하기도 한다. (인터폴헌장 6~14조)

둘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총 13명으로 구성(총재 1명, 부총재 4명, 집행위원 8명)되며, 총재를 제외한 위원들은 대륙별(미주·유럽·아시아·아프리카)로 3명씩 배정된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 및 감독, 총회에서 논의할 의제 작성, 각종 사업계획서 등을 총회에 제출 및 사무총국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2018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인터폴 총재에 당선(임기4년, 비상임, 무보수)되

었으며⁶⁾, 인터폴 총재 집무실은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이 아닌 총재 배출 국가에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김종양 인터폴 총재 집무실은 현재 경찰청 외사국에 마련되어 있다. (인터폴헌장 15~24조)

셋째, 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은 상설 행정기관으로 프랑스 리옹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국제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각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총본부인 셈이다. 각국에서 파견된 경찰관 등이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각 회원국 간의 협력 업무(인터폴 수배서 등)를 추진하고 있다.(인터폴헌장 25~30조)

넷째, 국가중앙사무국(NCB : National Central Bureau)은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각 국가 경찰 본부에 설치된 상설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NCB)은 경찰청 외사국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청 외사국장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Head of NCB)을 맡고 있다. 국가중앙사무국(NCB)은 총회의 결의사항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 사무총국 및 타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NCB)과 국제공사수사 협력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폴헌장 31~33조)

다. 인터폴의 기능

인터폴은 크게 ①전용 통신망 운영, ②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수배서 발부, ④지휘조정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인터폴 회원국들은 전용 통신망(I-24/7)을 이용하여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 회원국들간의 정보 교류 등을 하고 있다.

둘째, 인터폴은 각종 사건·사고 관련 DNA, 지문, 도난 여권, 도난 문화재 등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인터폴 회원국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 중이다.

셋째, 인터폴은 프랑스, 싱가포르, 아르헨티나에 지휘조정센터(Command and Coordin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

6) 2012.11월 제81차 인터폴 총회(로마)에서 아이사 지역 집행위원으로 선출 -> 제84차 인터폴 총회(르완다)에서 아시아 지역 부총재로 선출 -> 제87차 인터폴 총회(두바이)에서 총재로 선출

어를 공식어로 활용한다.

넷째, 인터폴은 회원국가들 간의 범죄자 검거 및 수사에 활용하고자 ‘수배서’를 발부하고 있다. 수배서는 총 8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한 ‘적색수배(Red Notice, 국제체포수배서, 범죄인 인도)’ 이외에도 청색수배(국제정보조회 수배서, 범죄관련인 소재 확인), 녹색수배(공공안전 위협에 대한 경고수배서, 우범자 정보), 황색수배(가출인수배서, 실종자 소재 확인), 흑색수배(신원미상자 수배서, 변사자 신원 확인), 오렌지색 수배(심각한 위협의 테러범, 위험물질 경고 수배서), 보라색 수배(범죄수법 등 정보의 공유), 기타 UN특별수배(UN안보리 제재대상 정보) 등이 있다.



제2절 국제공조수사 형태별 절차

1.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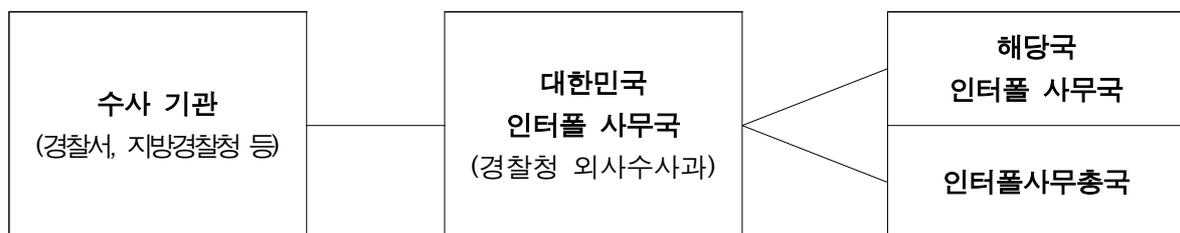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건·사

고 관련 사실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에 관하여 국가(경찰)간에 이뤄지지는 전반적인 협력을 일컫는다. 이는 외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경찰 기관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⁷⁾상 국제공조수사 범위는 ①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②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③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④기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소재수사,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진술조서 요청이나 각종 서류 검증 등의 범위에서 공조수사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공조수사의 요청 절차 및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찰관서에서 수사에 필요한 서류(국제공조수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 공조수사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인터폴 통신망(I-24/7)을 이용하여 해당국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게 되고, 해당국 인터폴에서는 자국의 법령 및 인터폴 규정의 범위내에서 공조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음으로써 공조수사는 종료되게 된다. 다만, 범국가적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하여 모든 회원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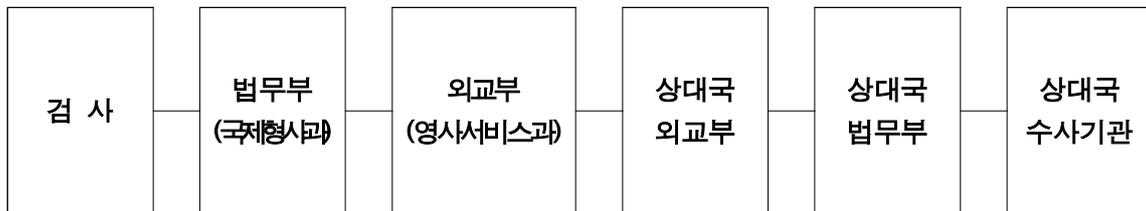


7)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조약, 범죄인 인도법 및 조약,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 제514호, 2007.10.30.)

2.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공조수사(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외교경로(각 국가 법무부)를 통한 국제공조수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각 국가들 간에 체결된 ‘형사사법 공조조약⁸⁾’을 근거로 국가들 간에 수사 협조가 이루어진다. 각 국가의 법무부를 통해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만큼 수사는 물론 재판과 관련한 증거 수집 및 압수·수색·검증 등 까지 협조가 가능하다. 다만 각 국가 법원의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피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법’, ‘범죄인인도조약⁹⁾’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3. 코리안데스크를 통한 국제공조수사

2007년 한국-필리핀 치안협력약정(MOU)을 맺어 치안교류를 해오다가, 2012년에 한국 경찰관 1명을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하였다. 이후 2015년에 1명, 2016년에 4명을 추가 파견함으로써 2019년 현재는 총 6명의 한국 경찰관이 필리핀 경찰청에 근무하며 코리안데스크를 운영중에 있다. 다만, 한국 경찰관의 필리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이나 필리핀법에 규정하기 어려워, 2013년 9월 10일에 ‘필리핀 경찰청과 대한민국 경찰청간 양해각서’를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¹⁰⁾

8) 한국은 유럽평의회 47개국을 포함 전세계 75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 중

9) 한국은 유럽평의회 47개국을 포함 전세계 76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

10) 한국·필리핀 양해각서 제9조(경찰연락데스크) : 양국 경찰은 상대국에 거주중인 다수의 자국 교민 들의 안전과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 조력·지원 서비스의 용이한 제공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상대 기관에 경찰연락 데스크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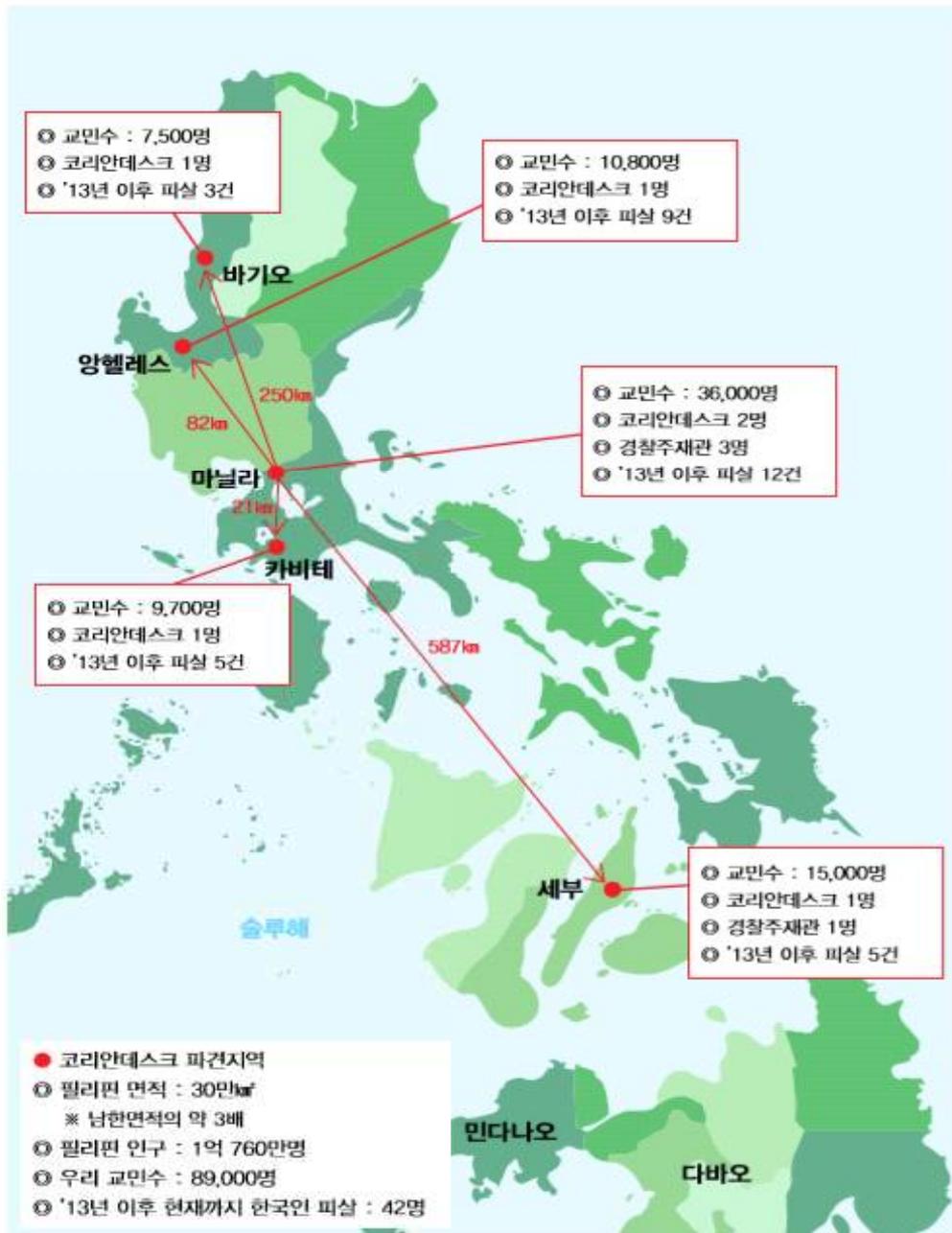
그런데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필리핀 내에서 수사권은 없다. 따라서 체포·압수 등의 필리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국인 대상 사건·사고시 필리핀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담당관의 직무)

1. 주재국 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살인·납치·강도 등) 수사 공조
2.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3. 주재국 내 한국인 도피사범 송환업무 지원
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5. 기타 경찰청 지시사항

한편,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에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2013년 7월 한-베트남 제5차 인터폴 회의에서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합의하였고, 2014년 10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시 베트남 당서기장에게 조속한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후 2015년 4월 한-베트남 코리안데스크 설치 MOU안을 교환 후 베트남公安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였다. 코리안데스크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베트남 경찰(4명)이 근무 하고 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처럼 한국 경찰관은 아직 파견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19년 7월 베트남 ‘또 람’公安부 장관 등이 한국 경찰청을 방문하여, 한국-베트남 치안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 등 인터폴 공조 강화 방안 논의한 바 있다.

[그림1] 필리핀 내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파견 현황(6명)¹¹⁾



4. 여권행정 제재(여권무효화)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을 위해 여권법(12조, 13조, 19조)에 근거하여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 국가별로 여권무효화의 효

11)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경찰청, 2017, P.37.

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태국 등의 경우는 여권이 무효화 된 한국인 도피사범을 불법체류자로 체포하여 한국으로 강제추방해 주고 있다. 이는 국외도피사범을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이다.

또한, 2017년 1월 이후 ‘무효화된 여권’의 정보가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SLTD) Data Base’에 등재 되어, 인터폴 회원국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도피사범의 국가간 이동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외도피사범의 수사시 ‘여권무효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제3장 | 국외도피사범 등 현황

제1절 재외국민 현황

1. 재외국민 의의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자’를 재외국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외교부 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제2조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외교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만큼 외교부 훈령에 명시된 재외국민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

2. 해외 출국자 및 재외국민 현황

국제 범죄의 발생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조사 차원에서 해외

출국자 및 체류유형별 재외국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출국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에는 10년 전인 2006년과 대비하였을 때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91.4%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외국민의 수는 2016년에 742만여 명으로 10년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5.4% 증가에 불과하였다. 해외출국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재외국민의 수는 2006년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한 후에 2016년에도 여전히 740만여 명에 불과하며 증가폭이 크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밝히기 어려웠다.

[표1] 재외국민 출국 현황 및 사건사고 현황

단위 : 명

연도	출국자	재 외 국 민						사건 사고
		계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소 계 (시민권자 제외)	시민권자	
2004	9,139,314	6,638,338	1,708,210	908,228	239,127	2,855,565	3,782,773	4,439
2006	11,833,511	7,044,716	1,451,346	1,211,148	334,288	2,996,782	4,047,934	3,191
2008	12,315,221	6,822,606	1,219,561	1,306,462	343,898	2,869,921	3,952,685	3,490
2010	12,807,359	7,268,771	1,148,891	1,317,554	329,579	2,796,024	4,472,747	3,716
2012	14,065,176	7,012,917	1,122,161	1,191,757	296,757	2,610,676	4,401,816	4,594
2014	16,372,830	7,184,872	1,080,559	1,115,353	276,384	2,472,746	4,712,126	5,952
2016	22,659,640	7,422,242	1,049,210	1,354,220	260,284	2,663,714	4,758,528	9,505

※ 출처 :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17), 외교백서(외교부 2017) 재구성/출국자는 승무원도 포함

제2절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현황

1. 연도별·범죄피해 유형별 현황¹²⁾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살인사건의 경우 2007년 30건에서 2016년 21건으로 감소하여 점진적으로 줄어주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납치·감금의 경우에는 2007년 89건에서 2009년 15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 최저치인 67건에 다다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살인·납치·감금 등의 강력사건과 달리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석해 볼 때 2007년의 251건이나 2016년의 269건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이 가장 흔하게 입고 있는 범죄피해는 강·절도이다. 전체 범죄 가운데 50~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는 수치를 보았을 때 그 피해의 심각성은 더 커 보인다. 2007년 강·절도 피해 건수는 1,650건에서 2016년 7372건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범죄에서 강·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에는 48.9%에서 2016년 77%로 강·절도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2] 재외국민 범죄피해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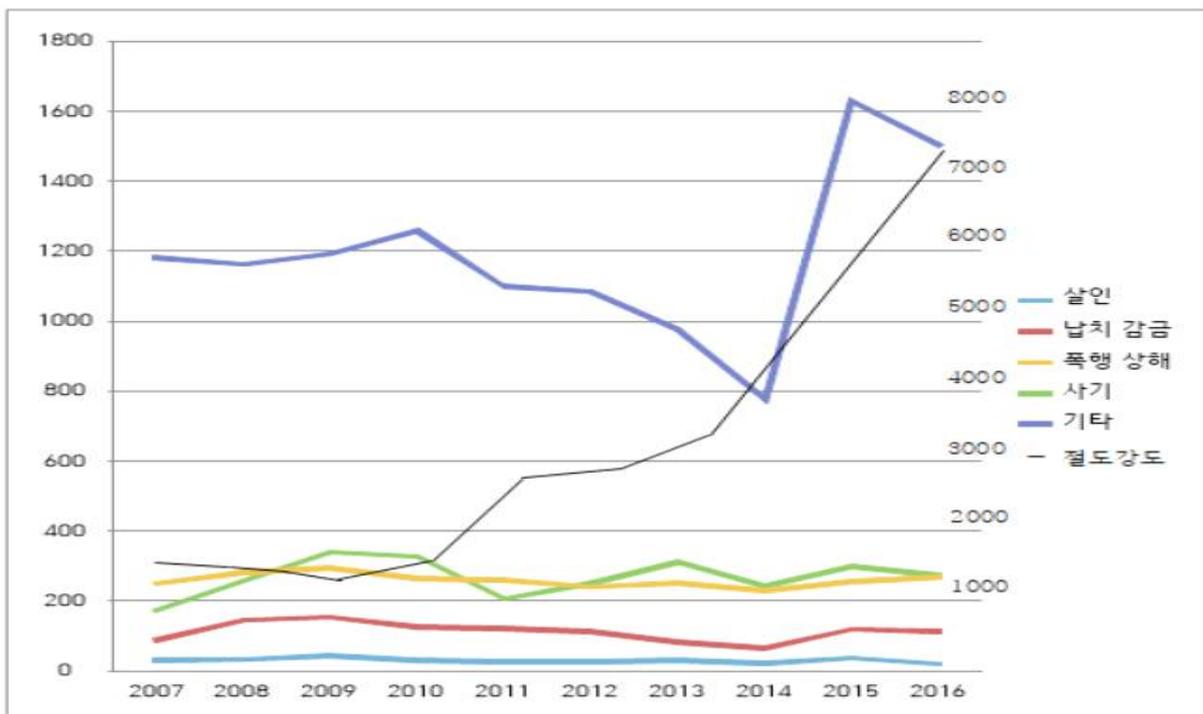
연도	살인	납치감금	상해폭행	절도강도	사기	기타	계
2007	30 (0.9)	89 (2.6)	251 (7.4)	1,650 (48.9)	175 (5.2)	1,182 (35.0)	3,377
2008	33 (1.0)	145 (4.3)	282 (8.4)	1,609 (47.6)	258 (7.6)	1,163 (34.4)	3,490
2009	43 (1.3)	155 (4.6)	295 (8.7)	1,491 (44.2)	340 (10.1)	1,193 (35.3)	3,517

12) 홍영호 외 4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년, 37면

2010	32 (0.9)	126 (3.7)	265 (7.8)	1,705 (50.5)	328 (9.7)	1,260 (37.3)	3,716
2011	28 (0.6)	121 (2.7)	259 (5.8)	2,743 (61.5)	207 (4.6)	1,100 (24.7)	4,458
2012	27 (0.6)	113 (2.5)	241 (5.2)	2,876 (62.6)	252 (5.5)	1,086 (23.6)	4,594
2013	30 (0.6)	82 (1.6)	252 (5.1)	3,314 (66.7)	311 (6.3)	978 (19.7)	4,967
2014	23 (0.4)	67 (1.1)	229 (3.8)	4,612 (77.5)	244 (4.1)	777 (13.1)	5,952
2015	37 (0.4)	119 (1.4)	255 (3.1)	5,957 (71.8)	299 (3.6)	1,631 (19.7)	8,298
2016	21 (0.2)	113 (1.2)	269 (2.8)	7,323 (77.0)	275 (2.9)	1,504 (15.9)	9,505

※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243, 2012:168 재구성, 외교부 재외국민과 통계

[그림2]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현황



2. 국가별·범죄피해 유형별 현황

국가별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국가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2016년)

단위:명(%)

유형 국가	살인	납치 감금	절도 강도	상해 폭행	사기	기타	계
일본	2	1	215	9	1	91	319
중국	1	73	665	106	81	410	1,336
미국	4	2	411	9	4	67	497
프랑스	0	0	633	0	0	15	648
이탈리아	1	0	755	1	1	15	773
스페인	0	0	897	0	0	5	902
독일	0	0	361	1	3	159	524
호주	0	4	14	20	44	151	233
기타	13	33	3,372	123	141	591	4,273
합계	21	113	7,323	269	275	1,504	9,505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243, 2012:168 재구성, 외교부 재외국민과 통계

3. 주요 피해 사례

<외교부, 국가별 지역정보 최신안전 소식>¹³⁾

필리핀 여행객 대상 호텔픽업차량 강도사건발생 안전공지 (2019.10.26.)

최근 클락 및 앙헬레스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호텔 픽업 차량을 가장해 여행객을 태우고 가던 중 강도로 돌변하여 흉기로 위협하여 여행객의 소지품을 강취하는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객들께서는 호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호텔 차량에 탑승하기 전 호텔 직원과 차량 운전기사의 신원과 소속을 미리 확인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경우 호텔 측에 한국인 직원 동행을 요청하는 등 신변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지역 한인회와 더불어 클락 및 앙헬레스 소재 한인 운영 호텔과 리조트 등에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호텔측에 차량 픽업 직원 및 기사들에게 호텔 아이디를 상시 패용하게 하는 등 자체 안전 체계를 강화하도록 계도 중에 있습니다.

제3절 국내범죄자의 국외 도피 현황

1. 연도별 국외도피 현황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총2,936명으로 연도별 도피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4] 연도별 국외도피 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도피인원	350명	434명	616명	528명	529명	429명

13)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352&pagenum=1&mst_id=MST000000000041&ctnm=&div_cd=252&st=title&stext=

2. 국가별 국외도피 현황

주요 도피 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으며,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고 추세에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경우 한국 여권소지자는 무비자(관광비자)로 1개월 이상 체류가 가능하여 언제든지 손쉽게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 일 것이다.

[표5] 국가별 국외도피 현황

	계	중국	필리핀	미국	태국	일본	베트남	홍콩	캐나다	캄보디아	인니	기타
2013년	137	37	22	21	5	7	5	4	3	2	4	27
2014년	226	81	33	31	14	11	3	8	6	3	2	34
2015년	306	95	56	20	41	13	14	10	3	5	4	45

3. 죄종별 국외도피 현황

죄종별 국외도피 현황을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비롯하여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가 주를 이룬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계획 범죄로 도주를 염두 한 만큼 국외도피가 많은 것으로 추측해 본다.

[표6] 죄종별 국외도피 현황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마약	위변조	기타
2013년	137	6	5	8	5	6	66	8	13	0	20
2014년	226	5	6	9	7	11	85	11	29	6	57
2015년	306	9	2	2	8	8	152	22	22	3	78

제4절 국외도피 사범의 국내송환 실태

1. 연도별 국내송환 현황

범죄를 저지른 뒤 국외로 도주하는 범죄자의 숫자가 증가함과 더불어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하여 국내송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송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상당하다.¹⁴⁾

[표7]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국내송환 현황¹⁵⁾

연 도	계	199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 원	1,643	574	54	61	74	99	120	148	216	297

2. 국가별 국내송환현황

국가별로 국내송환을 살펴보면 중국, 필리핀, 태국, 미국, 베트남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12년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2012년부터는 필리핀 지역으로 도주한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4) 2014~2019년 6월까지 국외 도피사범 송환율은 49.2%(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개)

15) 경찰통계연보(2016), 2016

[표8] 국가별 국외도피사범 국내송환 현황

	계	중국	필리핀	미국	태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인니	기타
계	1,643	309	319	178	221	62	123	69	42	243
1990~2008년	574	94	81	87	63	35	36	9	43	111
2009년	54	9	11	2	3	2	11	4	1	10
2010년	61	11	6	7	6	1	4	6	1	13
2011년	74	15	10	8	14	3	6	3	2	10
2012년	99	15	15	18	14	3	6	2	4	16
2013년	120	21	32	9	15	5	7	6	1	15
2014년	148	41	33	15	9	6	4	2	6	22
2015년	216	38	47	14	48	4	21	14	-	25
2016년	297	65	84	18	49	3	28	23	4	21

3. 범죄유형별 국내송환 현황

[표9] 범죄유형별 국외도피사범 국내송환 현황¹⁶⁾

	총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사기	횡령배임	마약	위변조	기타
합계	1,444	25	24	25	17	46	567	61	78	14	587
2019.6월	179	1	0	9	2	7	74	4	16	0	66
2018년	304	4	0	3	3	9	136	4	10	0	135
2017년	300	2	5	3	7	11	130	18	18	6	100
2016년	297	7	7	5	1	7	91	15	12	4	148
2015년	216	6	4	3	2	6	81	7	11	2	94
2014년	148	5	8	2	2	6	55	13	11	2	44

16) 소병원 의원실 보도자료(2019.9.30. 경찰청 자료)

4.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방식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인터폴 및 수사관서 경찰관이 도피국으로 출장을 가서 도피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도피범)를 인수 받아 국내로 호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요사건 피의자를 호송하거나 도피국 수사기관과 피의자 인수 일정이 조정이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피의자 송환이 긴급한 경우에는 도피국에 주재하고 있는 경찰주재관이 직접 한국까지 호송하여 수배 경찰관서에 인계하거나 도피국 경찰(또는 이민국)이 직접 한국까지 호송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주로 긴급한 경우 외에도 도피국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수사협조 유도를 위하여 담당 수사관들에게 국외출장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도피국 수사관의 출장비용은 한국 경찰청에서 대부분 부담한다. 셋째 피의자(도피범)가 대사관에 자수 의사 등을 밝히거나,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국적기 항공사와 협조하여 국내 공항에 도착시 체포하는 방식으로 송환을 하고 있다.

【국외도피사범 송환 방식】

- 인터폴 및 수사관서 경찰관을 도피국으로 파견하여 직접 피의자 호송
- 긴급 사안의 경우, 경찰주재관이 직접 호송하거나 도피국경찰 및 이민국 직원 등이 호송토록 조치
- 단순 사안인 경우, 국적기 항공사와 협조하여 송환(입국 시 검거)

| 제4장 | 국제공조수사 사례 연구

제1절 필리핀과의 영사 관계 및 사건·사고 현황

1. 필리핀 국가 현황¹⁷⁾

필리핀의 국명은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며 수도는 메트로 마닐라이다. 필리핀 전체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1억 810만여명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13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면적은 3,000,400km²로 한반도의 1.3배에 해당하며 7,107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의 65%가 산악지대이다. 기후는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로 전 세계인들의 휴양지 가운데 한 곳이다. 화폐 단위는 페소(Peso)¹⁸⁾이다.

민족 구성은 말레이계가 주를 이루나, 중국·미국·스페인계 혼혈이 다수를 이룬다. 인구의 83%가 가톨릭¹⁹⁾을 믿고 있으며,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²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만큼 전세계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연수를 오는 학생들 또한 많다. 이에 필리핀에서는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학생들에게 SSP(Special Study Permit)를 별도로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유학생 관리 및 세수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6년 단임)으로 2016.6월 로드리고 로아 두테르테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의회는 상·하원의 양원제²¹⁾ 형태이다. 국내총생산은 3,136억여원으로 세계 39위 국가²²⁾이며,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의 12.7%를 차지한다.²³⁾ 필리핀 관광부에 의하면 필리핀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7) 외교부, “2017 필리핀 개황”, 외교부, 2017.

18) 2019년 1페소당 23원 내외

19) 가톨릭 83%, 개신교 9%, 회교 5%, 불교 및 기타 3% 순(‘필리핀 개황’, 외교부, 2017)

20)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지역 정보> 필리핀 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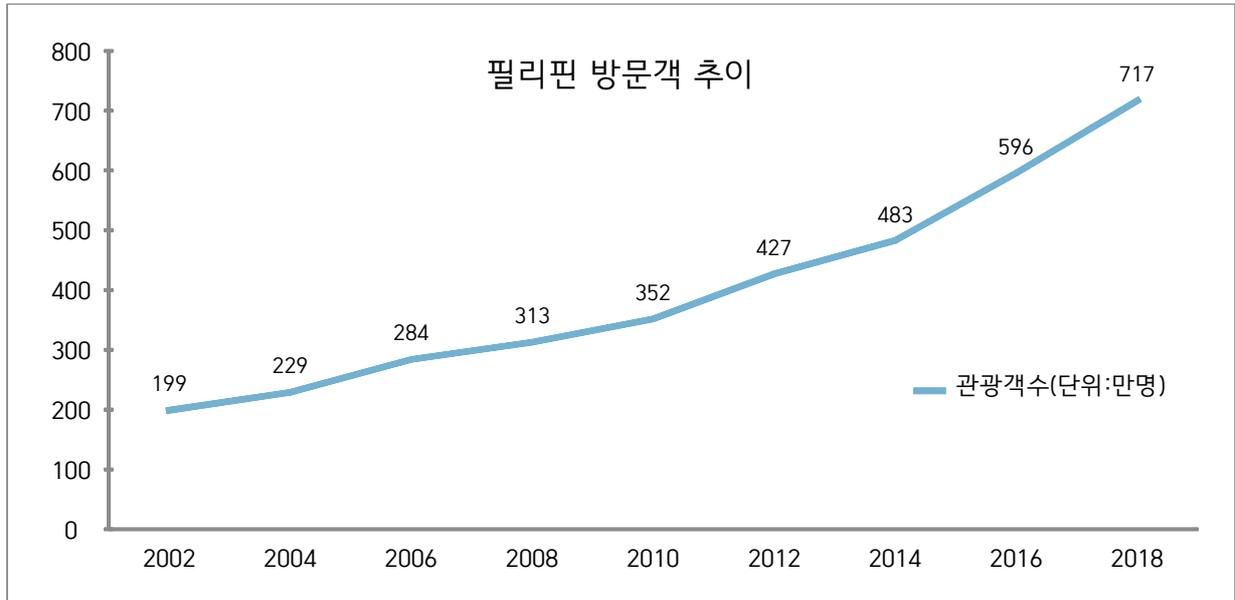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0

21) 상원(24석, 임기6년), 하원(295석, 임기3년)

22) 2017년, 통계청 KOSIS 기준

23) 2019.8.19. 아시아타임즈 “필리핀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손'은 한국인... 평균 157만원 지출”

[그림3] 필리핀 방문객 추이 (출처 : 필리핀 관광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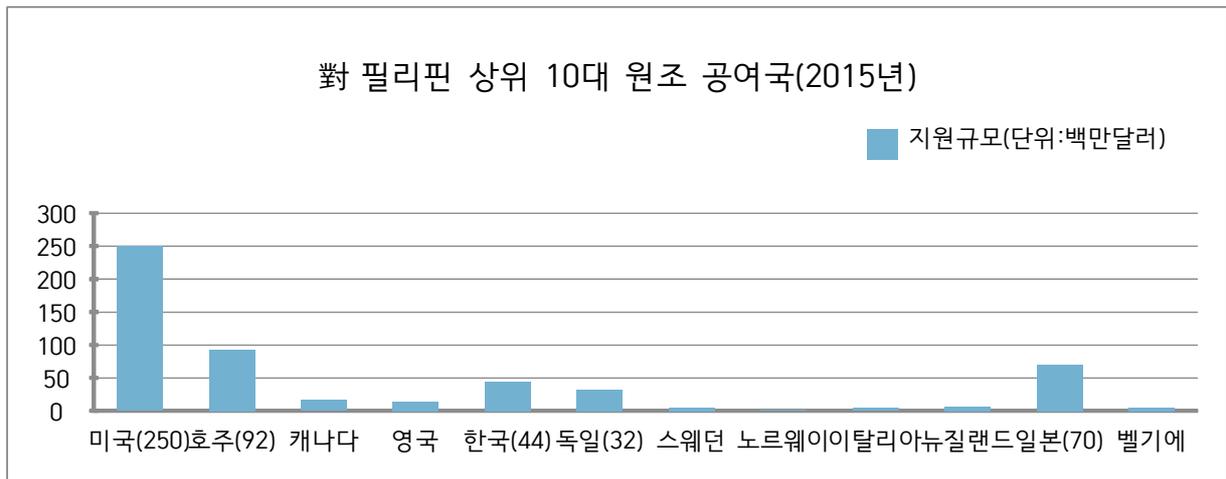
필리핀은 한국과 1949년 첫 수교를 한 이래, 1950년 한국전쟁에 필리핀 군대를 파병(7,420명)한 바 있다. 1954년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하였고 1958년에는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이렇듯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1948년) 후 우리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대만에 이어 필리핀과 수교하였을 정도로 필리핀은 오랜 우방국가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필리핀 양국 간 교역액은 105억 달러이며, 특히 2014년은 對필리핀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필리핀은 잠재력있는 대형 시장인 것이다. 2017년에는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액이 106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주로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휘발유 등이 주된 수출 품목이었다.²⁴⁾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필리핀 투자는 전기, 전자, 섬유, 조선 뿐만 아니라 SOC 건설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필리핀과의 오랜 수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필리핀을 원조해주기 시작하였다. 2017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 원조액은 2.3억 달러이며, 유상원조액은 9.51억 달러이다. 특히 원조액만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필리핀에 더 많은 공조를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중점 지원 분야는 ①

24)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지역 정보> 필리핀 공화국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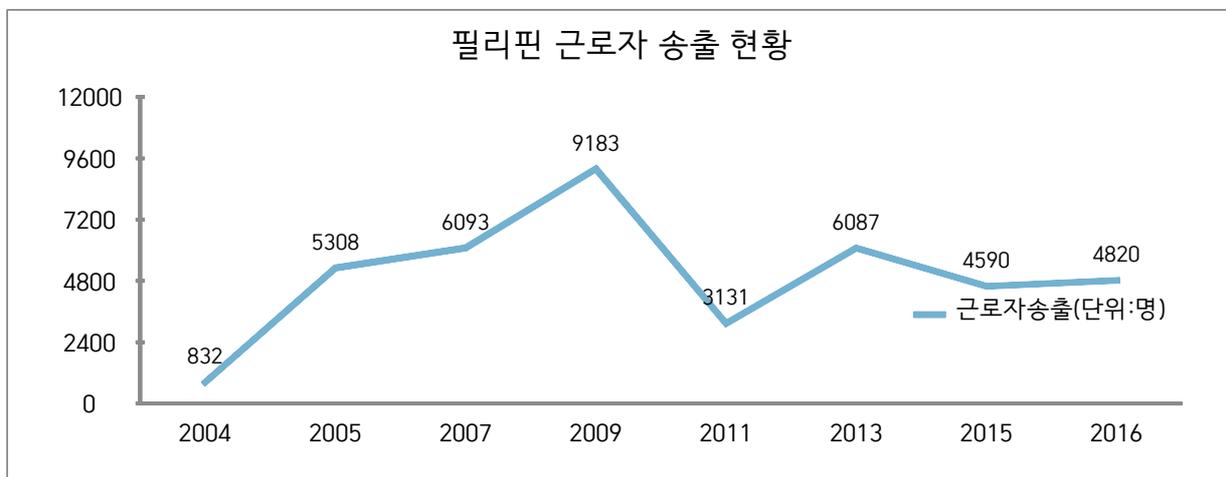
기초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지원, ② 소외지역 빈곤층 빈곤감소를 위한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 ③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 ④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재해위험 감축 지원이다.

[그림4] 필리핀 원조 공여국 현황(출처 : 외교부, 2017 필리핀 개황)



또한, 필리핀은 풍부한 인력 자원을 바탕으로 2004년에 우리나라와 외국 인고용허가제(EPS) 인력송출 MOU를 체결하였으며 7만여 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한국으로 송출하고 있다.(2017년 기준 필리핀 고용허가 쿼터는 5,400명)

[그림5] 필리핀 근로자 송출 현황(출처 : 외교부, 2017 필리핀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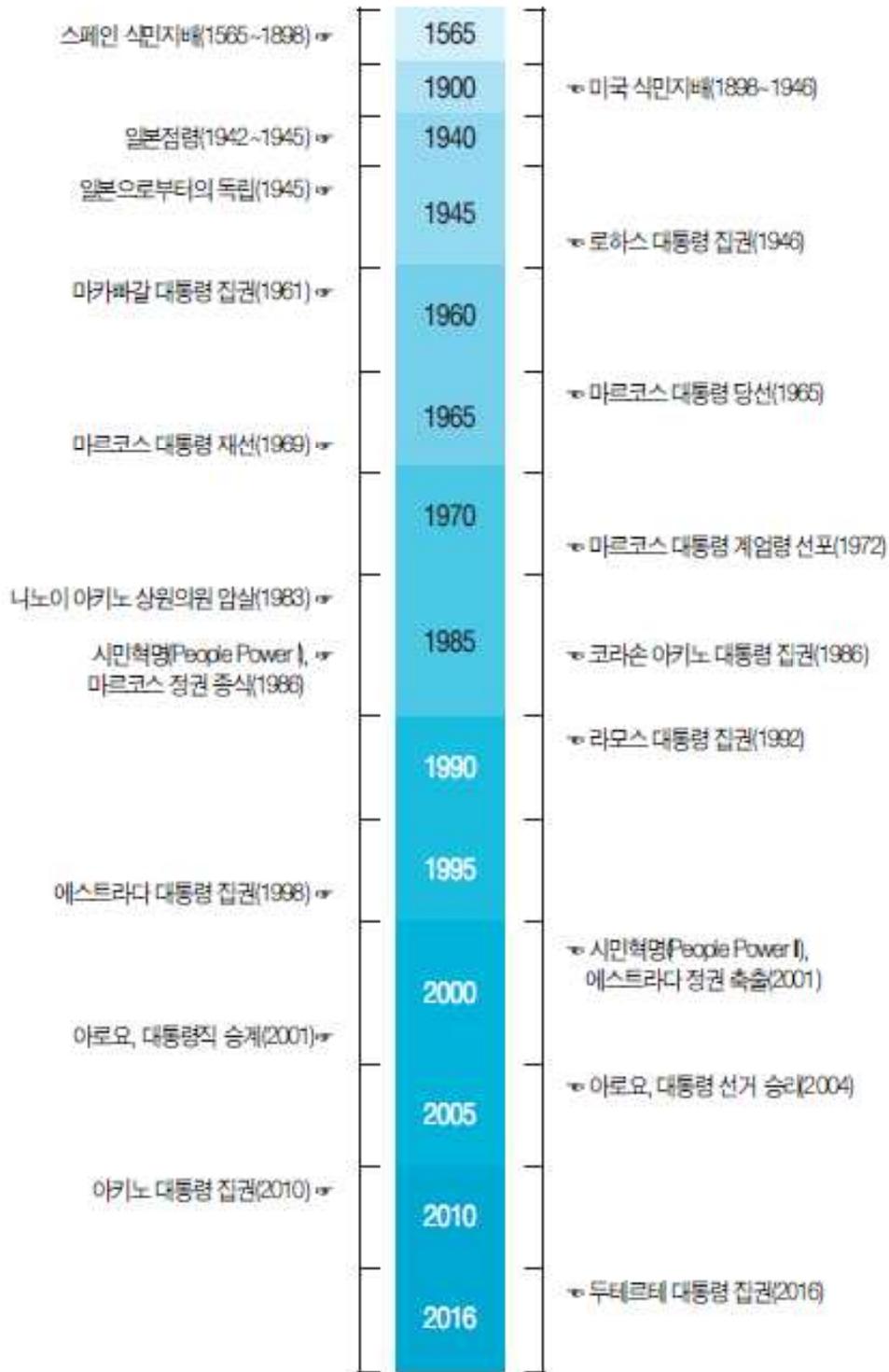
한편,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세부는 필리핀 중·남부 비사얀제도에 딸린 세부섬의 주도(主都)이며 세부시티라고도 한다. 필리핀 중·남부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인구는 300여만 명이며, 가장 오래된 스페인 식민도시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점령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세부라고 하면 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부는 섬 이름이다. 세부섬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사야 제도 있는 섬들의 중심에 있다. 세부섬의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2배가 넘으며 세부시(Cebu City), 만다우웨시 등이 있고, 세부섬과 다리로 연결된 막탄섬에는 라푸라푸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부라고하면 세부섬과 막탄섬을 포함한 전역으로 세부라고 칭하고 있다.²⁵⁾ 특히 세부시는 세부 섬에 있는 세부 주의 주도이자 1956년 필리핀의 수도를 마닐라로 옮기기 전까지 필리핀의 제1의 도시였다. 지금은 사실상 마닐라에 이어 필리핀의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세부는 우선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바탕으로 한 관광도시이다. 특히, 막탄섬의 경우에는 제이파크·샹그릴라·크림슨·플랜테이션베이 리조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5성급 최고급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330년간의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온 만큼 스페인 식민통치의 흔적이 남아 있어 역사의 도시로도 불린다. 이슬람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산 페드로 요새’를 비롯하여 이 지역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숭배하는 ‘산토니뇨(아기예수)상(像)’이 있다. 그리고 세부를 인류의 역사에 소개시켜준 세계적인 탐험가 마젤란이 세부에 가져온 ‘마젤란 십자가’ 등 유명하며, 이 외에도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자연환경과 어울려 있어 매우 매력적인 도시이다. 또한, 세부는 관광지이면서도 유학의 도시이다. 필리핀은 따갈로그어와 영어를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세부는 두 언어 외에도 세부 지역의 언어인 비사야어(시부아노)까지 사용하고 있다. 물론, 관광서 등에서 공문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는 모두 영어이다. 이렇기 때문에 전세계 비영어권 국가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체류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를 세원(稅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리핀 지역에서 단 하루라도

25) 기본 행정단위 :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 중임가능(2회)
 ○ 주(Province) : 81개
 ○ 시(City) : 145개
 ○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 1,489개
 ○ 동(Barangay) : 42,036개 / 필리핀 통계청, 2017.3월 기준

영어를 공부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들에게 SSP(Special Study Permit)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시 6,000페소(144,000원, 환율 1페소당 24원 기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인도에서 온 학생들이 많으며,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어학연수 보다는 세부 지역내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매우 많다. University of the Visayas의 Banilad Campus의 경우 1977년 개교하여 GULLAS MEDICAL CENTER와 함께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2/3의 이상이 해외에서 온 유학생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학생 가운데 대다수는 인도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 과거 20여년 전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세부에 소재한 의과대학 등에 손쉽게 입학하여 의사의 꿈을 키운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필리핀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필리핀 지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부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학생의 세부 지역 의과대학 진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²⁶⁾ 추측컨대, 인도의 경우 필리핀(세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 의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의과대학 졸업사실만으로도 제도적으로 본국에서 의사 자격 시험을 치러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세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 필리핀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등을 포함한 모든 전문 자격증을 외국인에게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최소한 영주권이 없으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연표로 본 필리핀 역사



[그림6] 필리핀 역사 [‘필리핀 개황’ , 외교부, 2017]

2. 필리핀 거주 한국인(재외국민) 현황

가. 필리핀 관광객

필리핀 관광부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41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었다. 그리고 이들이 지출한 금액은 47억여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6% 증가하는 등 매년 필리핀을 방문한 관광객과 이들이 지출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상반기에 한국인 관광객 94만 명이 필리핀을 찾았으며 이들의 지출액은 12억 3천만 달러로 미국·중국·일본 등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많았다. 이 기간 한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1,304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⁷⁾

[표10] 국가별 필리핀 방문객 수(단위 : 명), 필리핀 관광부

순위	국 가	2018	2017	2016	2015
1	한 국	1,587,959	1,607,821	1,475,081	1,175,472
2	중 국	1,255,258	968,447	675,663	490,841
3	미 국	1,034,396	957,813	779,217	722,750
4	일 본	631,801	584,180	535,238	495,662
5	호 주	279,821	259,433	251,098	241,187
6	대 만	240,842	236,777	229,303	177,670
7	캐나다	226,429	200,640	175,631	153,363
8	영 국	201,039	182,708	173,229	154,189
9	싱가포르	171,795	168,637	176,057	181,176
10	말레이시아	145,242	143,566	139,133	155,814

27) 2019.8.19. 아시아타임즈 “필리핀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손'은 한국인… 평균 157만원 지출”

나. 필리핀 거주 한국인(재외국민)

2018년 12월 기준 필리핀내 거주하는 한국 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은 85,125명이며 남자는 49,752명, 여자는 35,373명이다. 이 가운데 필리핀내 영주권자는 1.6%(1,367명)이 불과하고 거의 대다수는 체류자 이다.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수는 19,212명이다.

[그림7] 필리핀공화국내 재외동포 현황(출처 : 외교부, 2019 재외동포 현황)

국명 필리핀공화국 관할공관명 주필리핀대사관/ 주세부분관	구 분	재외동포 총수	거주자격별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재외국민 등록수
			영주권자	재외국민		계		
				체류자				
				일반	유학생			
총 계	남	49,752	879	44,630	4,225	49,734	18	
	여	35,373	488	31,825	3,056	35,369	4	
	계	85,125	1,367	76,455	7,281	85,103	22	19,212
	2017년대비 증감률(%)	-9	16	-7	-26	-9		

[그림8] 필리핀공화국내 체류 국민 현황(출처 : 외교부, 2019 재외동포 현황)²⁸⁾

주재국 정부 통계 + 통계에 안 잡히는 무비자 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추산 통계

국명 필리핀 관할공관명 주필리핀대사관/	구 분	재외동포 총수	거주자격별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재외국민 등록수
			영주권자	재외국민		계		
				체류자				
				일반	유학생			
총 계	남	33,072	885	30,685	1,484	33,054	18	
	여	19,643	519	18,249	871	19,639	4	
	계	52,715	1,404	48,934	2,355	52,693	22	19,212

28) ※ 통계자료의 출처 : 주재국 이민청(35,876명), 은퇴청(8,035명) 집계 합법 체류자 통계(43,911명) + 통계에 안 잡히는 무비자 체류자(10%추산)+불법체류자(10%추산)
 ※ 남녀 비율은 주재국 이민청 통계 자료 비율 적용 (남성 63%, 여성 37%)
 ※ 주재국 정부 통계중 한국인 체류자 전체통계 43,911명중 지역 확인이 안되는 체류자가 31,538명(72%)에 달해 지역별 통계는 생략

3. 한국-필리핀間 영사 관계

1949년 필리핀과 수교 이래, 1954년 마닐라에 한국 공사관 설치 후 1958년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2003년부터는 필리핀의 대표 공중파 방송인 GMA7에서 한국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가을동화> 등을 방영한 이래 2017년 <도깨비>에 이르기까지 필리핀의 주요 방송사를 통해 300여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 드라마를 ‘코리아노벨라(Koreanovela)’라고 부르고 있으며, K-pop의 열풍으로 2010년 원더걸스의 ‘노바디’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 당시 캠페인 송으로, 2013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필리핀 총선에서 캠페인 송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드라마와 음악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자연스레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인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여 2018년 기준 471,532명(201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필리핀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필리핀인의 한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 기간에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²⁹⁾

한국인 또한 159만명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등 필리핀 방문 외국인의 23%를 차지하여 한국인과 필리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필리핀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세부 지역에는 2015년에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³⁰⁾을 개설하여 양국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4. 한국-필리핀間 형사사법공조조약

1996년 필리핀은 한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에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 주목할 만 것은 2010년에 필리핀 경찰청 형사국 내에 한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코리아안 데스크를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개설 당시에는 필리핀 경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는 한국 경찰관을 필리핀(마닐라)으로 파견하여 근

29) 필리핀 방한 비자 45일 소요...“성수기인데 여행 취소 속출” (한겨레, 2019.12.0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9420.html

30) 개관 및 담당지역 : 2015.3.17. 개관, 필리핀 중앙부의 비사야 지역 16개 주 전체를 담당

주요 업무 : 공증, 재외국민등록, 비자, 여권·호적·병역 관련 업무

무토록 함으로써 한국인 관련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현재는 필리핀 전역(마닐라, 카비테, 앙헬레스, 세부 등)에 6명의 한국 경찰관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는 아래와 같다.³¹⁾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담당관의 직무)

1. 주재국 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살인·납치·강도 등) 수사 공조
2.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3. 주재국 내 한국인 도피사범 송환업무 지원
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5. 기타 경찰청 지시사항

참고로, 후술하겠지만 2015년 12월부터는 필리핀에 이어 한국인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에도 베트남公安부 안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여 한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인 경찰관의 베트남 현지 파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³²⁾

5. 필리핀내 한국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 현황

2010년 이후 필리핀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자료는 오로지 주요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한국인에 의해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현황은 필리핀 당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의 표가 시사하듯 필리핀 지역에서 한국인이 피살 되거나 강도 및 납치·감금되는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상 해외에서 피살된 한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필리핀에서 피살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 및 재외 국민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³³⁾

31) 2017년 6월 시행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31호)’

32) 2015. 2 경찰청 브리핑, “경찰청, 필리핀내 우리국민 안전 확보에 발벗고 나서다!” 79) 경찰청홈페이지>일 반문서>경찰청브리핑, 2015.12.7., “한국-베트남, ‘경찰연락데스크’동시개소”,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77552&fileSn=1&bbsId=B0000011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77552&fileSn=1&bbsId=B0000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국민 98명이 해외에서 피살당했다. 이 중 약 35%인 34명은 필리핀에서 사고를 당했다. ... 후략 (“재외국민 사고 35% 필리핀서” , 충청투데이, 2019.10.11.)

[표11] 필리핀내 한국인 대상 사건·사고 현황, 외교부³⁴⁾

단위 : 명

발생연도	소 계	살인	강도	납치·감금
2010	17	6	5	6
2011	37	7	14	6
2012	17	6	4	7
2013	34	12	13	9
2014	36	10	17	9
2015	43	11	19	13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사건·사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2015년 세부 지역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434건이며, 그 가운데 한국인 대상 살인사건은 6건으로 전체 대비 1.38%로 조사되었다.

33) “재외국민 사고 35% 필리핀서”, 충청투데이, 2019.10.11.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501>

34)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국가별 기본정보>필리핀,
[http://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2\(2019.11.16검색\)](http://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2(2019.11.16검색))

[그림12] 필리핀 세부 지역내 한국인 대상 사건·사고 현황, 외교부³⁵⁾ 단위 : 명

발생연도	소 계	살인	강도	납치·감금
2018.8월	83	2	2	0
2017	122	1	5	2
2016	48	0	9	2
2015	29	6	6	3

[그림13] 필리핀 세부 지역내 도시별 살인사건 현황, 외교부³⁶⁾ 단위 : 명

발생연도	소 계	세부시	라푸라푸시	만다웨시	세부주
2018.8월	227	50	42	17	118
2017	381	87	53	12	229
2016	455	103	39	47	266
2015	434	115	39	18	262

6. 필리핀의 형사 절차

가. 형사절차 개요

필리핀의 형사 절차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공개재판주의’ 등을 형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형사재판은 재판 건수에 비해 법원과 법관(판사)의 수가 매우 적어 1심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지연되기로 악명이 높다. 또한, 필리핀 내 교도소가 정원을 훨씬 상회하여 수용하고 있어 더 이상 범죄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재판을 지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필리핀의 사법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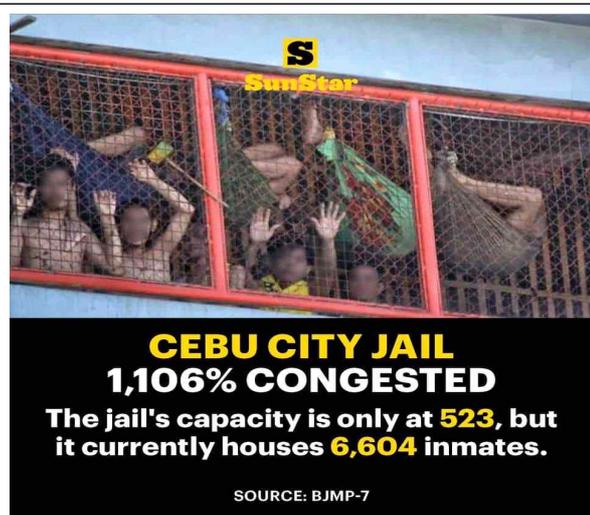
35)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국가별 기본정보>필리핀, http://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2(2019.11.16검색)

36) 필리핀 경찰청 세부 관할 경찰청 (PRO 7) 협조 / 현지 자료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은 2015년에 개소, 지역별 통계 분류가 쉽지 않으나 살인 사건의 경우 2014년 1건, 2013년 4건 발생

37) 필리핀 두테르테 취임 한달 교도소는 '콩나물 시루' (TV조선, 2016.8.1.)



2020.4월 연합뉴스 보도 사진³⁸⁾



2020.4월 Sunstar 페이스북

그리고 대부분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고소(filing)를 했을 때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조사) 절차를 필리핀 경찰에서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고소인이 고소(filing)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고소하더라도 피고소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하면 사실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만큼 고소전 수사(조사)가 매우 중요하나 필리핀의 수사시스템상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사건이나 현행범인 체포 등의 사건이 아닌 이상은 수사(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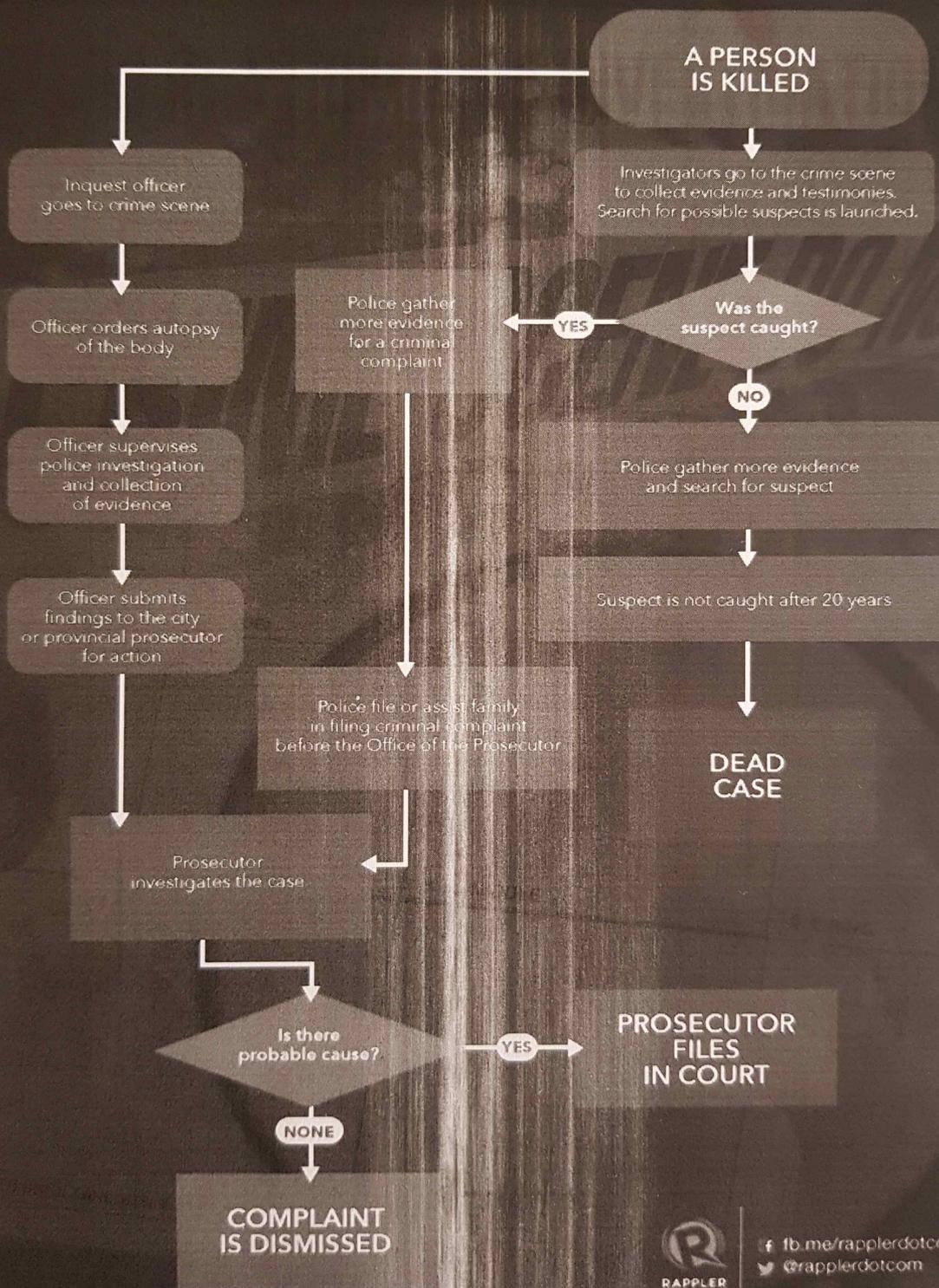
필리핀 형사 절차를 살인 사건을 예로 들어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는 필리핀 형사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1/201608019004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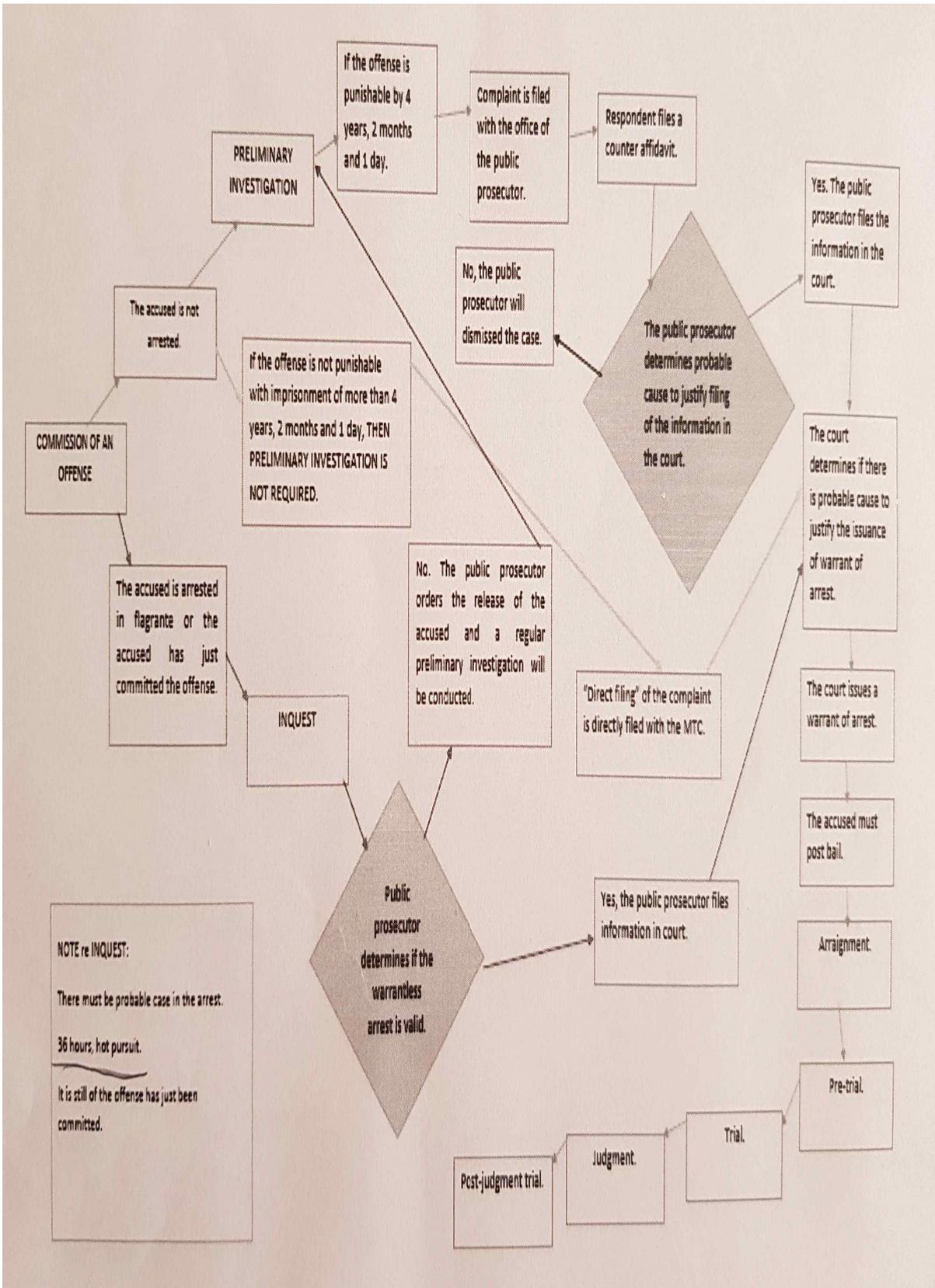
38) 잠잘 공간도 부족 동남아 '콩나물시루' 교도소, 코로나19 비상(종합)(연합뉴스, 2020.4.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8030551076?input=119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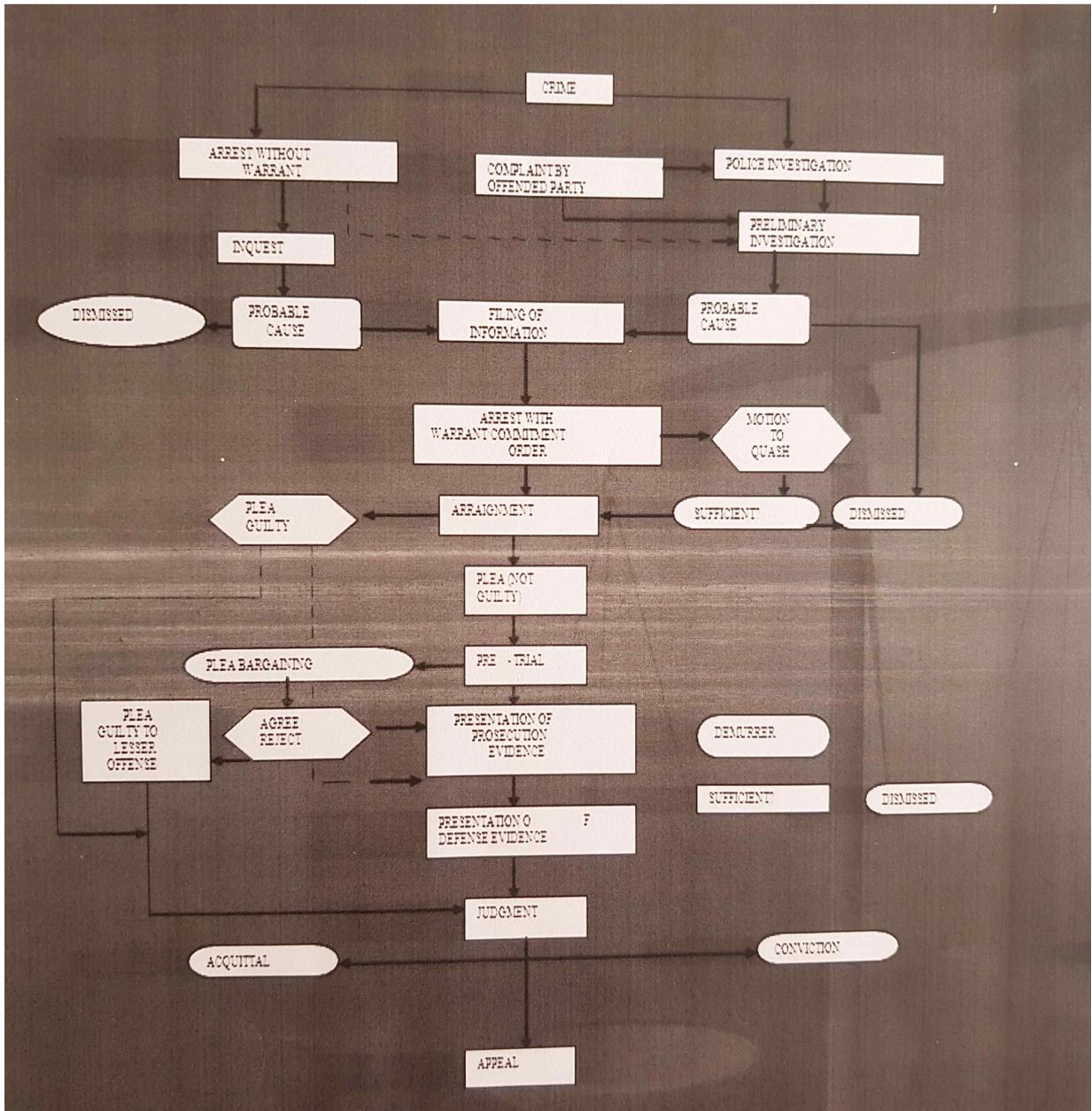
STEPS IN A HOMICIDE INVESTIGATION



[그림9] 살인사건 수사 절차(출처 : UC school of law)



[그림10] 살인사건 수사 절차(출처 : UC school of law)



[그림11] 살인사건 수사 절차(출처 : UC school of law)

나. 기소 후 재판 절차

고소인(피해자)이 고소(filing)를 하게 되면 검사는 고소사실을 바탕으로 범죄혐의의 유무에 대한 사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하게 된다. 사전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filing of information)를 하게 된다. 형사법원의 담당 판사는 사건을 검토 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하여 피고인(피의자)을 법원에 인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우리나라의 사전구속영장 절차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대다수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일단 법원에 인치 후 보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전구속영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살인·마약·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보석 절차를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필리핀의 법원 관할을 범죄 발생지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관할을 나누고 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6년 이상의 중범죄는 RTC(Regional Trial Court)에서 담당하고, 6년 이하의 범죄의 경우에는 MTC(Municipal Trial Court) 혹은 MCTC(Municipal Circuit Trial Court)에서 담당하게 된다. 물론 RTC(Regional Trial Court)는 MTC(Municipal Trial Court) 판결의 항소심 사건도 담당한다.

재판의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를 통해 시작된다. 담당 판사가 기소 내용을 피고인에게 고지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이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절차에는 없는 제도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같은 구약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할 경우(plea of guilty)에는 감형해주고 사실상 피고인의 범행 시인만으로 재판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신속하게 재판 절차가 종료된다.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Plea of not guilty)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가 없어 피고인이 정식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할 경우에 공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후 사전심리(Pre trail)절차가 진행되고 이것은 혐의 사실, 증거 목록 등을 양 당사자(원고,피고)가 간에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때 판사는 양 당사자에게 일종의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게 된다. 특히 원고(검사) 측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경우에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편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전에 피고인은 공소기각신청(Motion of

Quash)을 할 수 있다.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죄를 구성하기 않거나 해당 법원에 당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원고(검사)나 피고(피의자)는 해당 형사법원에 잠정적 기각(Provisional Dismissal)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6년 초과 범죄에 대해서는 2년, 6년 이하 범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일시적으로 공판의 진행을 중단(법률상 기각)하고 해당 기간 동안 사건이 재기되지 않으면 당해 사건은 영영 기각되는 절차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사절차이다.

정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원고(검사)는 증거를 모두 제시하게 되고 피고는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항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판사의 허락하게 10일 이내에 증거항변을 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증거 항변이 인정되거나 원고(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기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에 기속되지 않고 다만 권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형사배상명령제도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 절도, 감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 한하여 해당 형사공판 절차 과정에서 유죄 선고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행한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도 범죄 피해 사건으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형사 법정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민사판결도 같은 형사 법정에서 판결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다. 경찰,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필리핀의 수사(조사) 절차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대부분 고소(filing)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된다. 사실상 경찰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많지 않으며 이 또한 공판 절차에서 큰 의미는 없다. 기소 전 검사의 사전 조사

(preliminary investigation)도 마찬가지이다.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시인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나 사전심리(Pre trail)절차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신문조서는 거의 작성하지 않으며 사실상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만 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경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의 능력과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차등을 두었다.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진정하게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진술 내용을 법원에서 번복하더라도 검찰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고, 공판중심의 증거재판주의가 보다 확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공판중심의 증거재판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필리핀의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검찰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하는 사법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³⁹⁾

39) 필리핀 세부 소재 UC School of Law에는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가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들과 인터뷰해 본 결과 수사기관에서 조서 작성을 잘하여도 판사 앞에서 범죄사실을 부정하면 해당 조서 내용이 전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조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으며 형식적이 요건을 위한 간단한 조서 작성 외에는 증거 수집이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함.

인권위 ‘검찰신문조서’ 피의자가 인정 안하면 증거 안된다(국민일보, 2019.11.19.)⁴⁰⁾

국기인권위원회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일지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있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검찰 조서만을 특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사는 법관처럼 제3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피의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에 직접 물어보면 되는 만큼 굳이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 중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검찰 수사의 의미가 축소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반박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개정안대로 바뀐다면 검찰이 증거로 인정 못 받는 신문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자백한 다음 재판에서 수사 결과를 일체 부정하면 법정 공방이 훨씬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국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는 십수년 전부터 있었다”며 “이번 의견 표명 또한 올해 초부터 검토해온 내용인 만큼 조 전 장관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4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42115&code=61121111&cp=nv>

제2절 국제공조수사 사례 분석

1. 최근 국제공조수사 사례 소개

경찰청(외사국 인터폴계)에서 국제공조수사를 한 실제 사례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공조수사, ②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공조수사, ③ 산업기술 유출 관련 공조수사, ④ 해외도피 사범 관련 수사, ⑤ 기타 자국민 대상 강력 사건 관련 공조수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경찰청 외사국에서 발행한 외사매거진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다.

<사례1> 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 검거 / 외사매거진 65호(2019.9.6)

2015.12월~2016.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캐피탈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 9명 검거

<사례2> 성매매강요 혐의 피의자 검거·송환 / 외사매거진 65호(2019.9.6)

2018.6월~2018.7월 공범들과 함께 취업을 미끼로 태국인 여성 5명을 한국으로 데려온 후, 60회 이상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및 송환

<사례3> 사기 혐의 나이지리아 국외도피사범 최초 송환(외사매거진 64호, 2019.8.7.)

2008.9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6,570 만원을 편취한 후, 나이지리아로 도피한 피의자 국내 송환(나이지리아 최초) / 피의자가 불법체류 혐의로 나이지리아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 후 2019.7월 현지 공조를 통해 최초 송환

<사례4> 중국 내 보이스피싱 등 도피사범 집중 송환(외사매거진 63호, 2019. 7.19)

피해자 300명, 피해금액 2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비롯, 중국 광저우 및 옌지에서 검거된 피의자 6명을 도피사범 송환 프로젝트(항공보안상 국적기 1대에 피의자 2명까지만 탑승 가능, 6.26~27 광저우에서 1명, 7.2~7.4 옌지에서 5명 분산 송환)에 따라 전력 송환 / 2019.1~5월 중국 인터폴과 지속 공조, 피의자들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검거, 2019.6월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公安부와 호송팀 파견 성사

<사례5> 해외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63호, 2019. 7.19)

2015.3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37명을 한-말레이시아 경찰 합동 검거단이 사무실을 급습하여 전원 체포 및 국내송환 / 2019.6월 IP추적을 통해 피의자들 사무실 위치 특정 후 일제 검거, 2019.7월 중요 피의자 6명은 강제송환 후 남은 31명은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송환

<사례6>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외사매거진 62호, 2019.7.5.)

2012.9월~2012.10월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캐피탈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출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 26명 검거(구속24) / 첩보 입수 수 피의자들의 출입국기록 및 금융거래내역 등 정밀 분석, 콜센터를 특정하여 순차적으로 피의자들 검거

<사례7> 5G통신 관련 핵심 산업기술 유출 피의자 검거(외사매거진 62호, 2019.7.5.)

2015.12월 피해업체가 정부지원금 포함 12억원을 들여 개발한 ‘액티브 광케이블’ 설계도면을 유출, 2016.3월 순차적으로 퇴사 후 미국법인에 특허출원 및 중국에서 동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는 피의자 15명 검거

<사례8> 국외도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외사매거진 62호, 2019.7.5.)

2017.10월부터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태국 경찰의 단속으로 검거되었으나, 태국 법원의 보석허가 후 라오스로 도주한 피의자 4명을 현지 공조로 검거 송환 / 2019.3월 태국 라오스 경찰주재관은 피의자들이 라오스로 밀입국한다는 첩보입수 19.6월 라오스 인터폴과 공조하여 피의자 4명 전원 검거

<사례9> 필리핀 호텔방 총기자살 관련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61호, 2019. 6.18.)

2016.7월 사건 외 A 대상 셋업 범죄가 실패하자 필리핀 마닐라 소재 호텔방에서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권총으로 자살케 한 피의자 검거 송환 / 2019.3월 필리핀 법원에서 무죄 선고 및 강제추방 명령 발부

* 셋업 범죄 : 의도적으로 흥기 마약 등을 피해자의 소지품에 넣어놓고 신고한 뒤, 합의를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사례10> 부정수표 발행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61호, 2019. 6.18.)

1991.8월~1994.6월 H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며 안산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 15억원 상당의 부정수표를 발행 후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송환 / 2016.4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19.4월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피의자 검거되어 국내 송환

<사례11> 아동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60호, 2019. 5.28.)

2017.9월~2018.12월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 1만 3천여건을 유포 후 일본 오사카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송환 / 2019.3월 인터폴 SLTD(도난분실여권정보시스템)을 통해 피의자가 일본으로 도피한 사실 확인 후 적색수배 신청

<사례12> 사기 혐의 호주 국외도피사범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9호, 2019. 5.10)

2012.3월~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변호사를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수입료 명목으로 8억 5천만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피의자 2명 검거송환 / 2017.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피의자들 현지 체포 구금, 호주 인터폴과 경찰주재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강제추방 결정 후 19.5월 국내송환

<사례13> 사기 혐의 호주 국외도피사범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9호, 2019. 5.10)

2012.3월~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변호사를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수입료 명목으로 8억 5천만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피의자 2명 검거송환 / 2017.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피의자들 현지 체포 구금, 호주 인터폴과 경찰주재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강제추방 결정 후 2019.5월 국내송환

<사례14> 인터폴 도난분실여권시스템 이용 수배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7호, 2019. 4.5)

인터폴에서 운영 중인 도난분실여권 D/B로 문제성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시스템

8억원 횡령 후 20년간 해외로 도피해온 피의자를 인터폴 SLTD를 활용하여 검거 송환
피의자가 베트남 입국과정에서 사용한 위조여권이 인터폴 SLTD에 적발, 한국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4시간만에 발급 후 현지 경찰주재관과 공안이 신속공조하여 국내송환

<사례15> 국외도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외사매거진 56호, 2019. 3.22)

2014.12월부터 불법스포츠평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자금 2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 2명을 현지 공조로 검거 송환

2018.11.20. 필리핀 카비테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이민청이 공조하여 잠복 끝에 검거, 2019.3.15 국내송환

<사례16> 국외도피 87억원 사기사건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5호, 2019. 3.4)

2012~2013년 국내에서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87억원을 유사수신 또는 개별 편취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현지 공조로 검거 송환

2018.3.22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서 현지 경찰주재관과 이민청이 공조하여 검거 되었으나, 2018.10.29 탈옥

2018.12.6 마닐라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이 공조하여 재검거 후 2019.2.21국내송환

<사례17> 국외도피 통화위조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5호,2019. 3.4)

2014.9월 8천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 환치기에 활용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칭다오 공항에서 검거 후 신속히 송환

2019.2.21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피의자를 현지 경찰주재관과 함께 포착, 중국 공안과 공조하여 발견 1시간만에 검거 및 송환 절차 진행

<사례18> 마약 밀수 관련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외사매거진 54호,2019. 2.18)

보라색수배서 : 인터폴 회원국간 특정 범죄수법 대상 장치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문서로, 전 세계 총 850건 발부되었으며, 한국은 3번째 발부

국내 수사사례가 국제적인 범죄수사 참고자료로 활용, 외사·수사 기능 협업을 통한 보라색 수배서 최초 발부

수배서 내용 : 18.8월 한·일·대만 마약조직이 나사제조기에 은닉 후 밀수한 필로폰 90kg(도합 3천억원 상당)을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한 사례 관련 범죄정보

<사례19> 국외도피 사기사건 피의자 송환(외사매거진 54호, 2019. 2.18)

2018.1.9. 홍콩에서 가상화폐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교부받은후 필리핀으로 재도피한 피의자 검거 송환

2018.9.13 필리핀 현지 이민청과 공조, 비자 연장을 신청하러 이민청에 직접 방문한 피의자 현장 검거, 2019.2.13 호송관 파견하여 송환

<사례20> 태국내 한국인 피살 사건 피의자 검거(외사매거진 53호, 2019. 2.1)

2019.1.21.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던 피의자를 토막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피의자 3명 검거

태국 경찰주재관은 현지 경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 진행, 1.24 은신처에서 피의자 1명 검거 후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주피의자 순차적으로 검거

<사례21> ‘수면비행선박’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피의자 검거(외사매거진 53(2019. 2.1)

2015.7월~16.2월 피해 업체의 국가핵심기술인 ‘수면비행선박’ 설계기술을 USB에 저장하여 유출한 후 말레이시아 소재 00업체에 제공한 피의자 2명 검거

국가핵심기술 유출 첩보 입수,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 확보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

<사례22> 마약 밀반입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2호, 2019. 1.18)

2016.1~18.4월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80억원 상당의 필로폰 10kg을 한국에 밀반입 후 국내 판매총책을 동원하여 판매한 피의자 검거 송환

2018.11월 현지 경찰주재관은 캄보디아 경찰과 검거 작전 수립, 은선처 확인 후 급습하여 피의자 검거

<사례23>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2호, 2019.1.18)

2016.4월부터 방문회원 1억명을 보유한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아동 음란물 등 14만개를 유포하고, 음란물 다운로드 시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2억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검거 송환 / 적색수배서 발부 후 태국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속 검거

<사례24> 주식매입 대금 사기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1호, 2019. 1.5)

2010.4월 피해자의 주식을 관리하는 A에게 “00社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 취득 공시를 할 예정이니, 주식 매입을 도와달라” 고 기망, A를 통해 피해자 소유 주식 30만주 (7,360만원 상당)를 교부 받은 후,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피의자 검거 송환
2018.5월 필리핀 파라냐케 시에서 코리아데스크 담당관과 현지 이민청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

<사례25>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1호, 2019. 1.5)

16.8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일부 대출금 선변제 명목으로 총32명으로부터 도합 4,473만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 송환 / 현지 불법체류 혐의로 18.12.26 칭다오 공안국에 검거

<사례26> 투자사기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50호, 2018. 12.21)

2010.3월 부산 연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취폐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주겠다” 고 기망하여 총 6억 6천만원을 편취한 후 2010.10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 검거 송환 / 2017.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로 이감되어 수감 중 국내 송환

<사례27> 병원 상대 공갈미수 피의자 검거 송환(외사매거진 49호, 2018. 12. 7)

중국 체류중, 강남 소재 00성형외과 서버를 해킹하여 환자 908명의 개인정보, 상담차트 및 시술사진을 빼낸 후, 2013.8월부터 1개월간 병원 등을 상대로 5억원을 요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피의자 검거 송환 / 2018.10월 마약흡입 혐의로 중국 칭다오 공안국에 체포되었으며,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수배 사실 통보 받아 2018.11.27 국내 송환

<사례28> 필리핀 관광객 상대 셋업 범죄 피의자 검거(외사매거진 48호, 2018. 11. 23)

2015.2월 필리핀에서 필리핀 현지 경찰·가이드와 공모, 관광객들에게 성매매알선 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 후 합의·사건무마 등 명목으로 4,612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송환 / 2015.8월 필리핀 카비테에서 별건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현지 수용소 수감, 18.10월 현지 추방 절차 종료 후 국내 송환

<사례29> 해외 신용카드 위조·부정사용 루마니아인 검거(외사매거진 48호, 2018. 11. 23)

2018.9월 국내 입국해 미국·유럽 발행 해외신용카드 371매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1개월간 서울 소재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총189회에 걸쳐 3,690만원을 인출 시도한 루마니아인 피의자 2명 검거 / 인터폴(루마니아 범죄정보국)로부터 피의자 신원정보 통보받은 후, 피의자 2명 미행하여 범행확인 및 증거확보 후 검거

<사례30> 건설업체 운영 사기 피의자 검거·송환(외사매거진 47호, 2018. 11. 9)

2003.10월~09.6월 국내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체결된 계약이 없음에도 계약이 있는 것 처럼 속여 계약금 명목 1,300만원 등 도합 8회에 걸쳐 4억 5,400만원을 편취하고 2009.12월 라오스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송환 / 2016.10월 라오스 사법당국으로부터 별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아, 18.10월까지 형기를 마친 후 국내 송환

<사례31호>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송환(외사매거진 45호, 2018.10.12)

2012.12월~2015.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수 공범들과 공모하여 1,637억 상당 규모의 불법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피의자 검거·송환 /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현지 이민청과의 공조를 통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피의자 검거

2. 필리핀과 공조수사 사례

필리핀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사전에 관광비자 등의 발급 없이 필리핀 입국시 1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이민국에서 발급해주고 있다. 또한 입국 후에는 이민국을 방문하여 관광비자 연장이 손쉬워 1년간 관광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 국내 범죄자가 주요 도피 대상국 가운데 하나다.

국외도피사범의 경우 대부분은 제3의 도피국을 경유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함으로써 국내 수사기관에서 소재 파악이 어렵다. 다만 신속하게 인터폴 수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필리핀 입국 심사시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한국 경찰 주재관에 통보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실제로 필리핀 세부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부 이민국의 협조로 인터폴 수배자를 검거하여 한국으로 송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OO은 2018년 12월 서울 OO경찰서에서 사기(50억)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홍콩으로 도피하여 생활하던 중 2019년 7월 필리핀 세부 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이민청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사실을 확인하였다. 필리핀 이민청은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소속(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담당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후 경찰주재관 등은 현장에서 김OO씨와 면담 등을 통해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고 다음 한국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귀국토록 조치하였고, 인천공항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이 김OO을 바로 체포하여 사건을 종결바 있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국제공조수사의 유형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수배자가 자진 귀국토록 함으로써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감금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만큼 비록 수배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적합한 조치인 것이다.

다음 사례는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현지법을 위반하여 한국 경찰주재관 등이 현지 수사기관으로부터 한국인 범죄자를 통보받은 사안이다. 박OO은 2015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죄로 지명수배되어 필리핀 세부로 도주하여 생활해오던 중에 2019년 8월 필리핀 다바오시티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현지 수사기관인 PDEA(마약단속국)에 의해 검거되었다. 필리핀 경찰청은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박OO은 필리핀 내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이미 장기간 구금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석방(보석)의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에서 신병을 인도받아 국내 송환이 가능하도록 해당 절차를 준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OO 등 4명은 2019년 2월 인천 OO경찰서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필리핀 세부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에 자진추방 신청 및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사례이다. 오OO 등 4명은 공범간의 불화 및 현지 도피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찰주재관은 수배 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귀국 시점 조울 및 필리핀 이민청과 협의하여 오OO을 추방 형식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시켰고, 이들을 수배한 경찰서 담당 수사관들이 인천 공항에서 이들을 체포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위의 세 가지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국외도피사범 검거 및 국내 송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3. 최초의 인터폴과 합동검거 작전 사례

그동안 한국 경찰이 국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해 외국 경찰과 개별적으로 공조한 사례는 많다.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인터폴 사무총국과 공동으로 검거 작전을 주관하는 공동 주관국 및 인터폴 총재 배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국익과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도박·마약 등의 중요 국제범죄자 검거에 나선바 있다.

이번 작전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아세안(ASEAN) 회원 10개국과 중국·일본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태국에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다가 라오스로 도주한 한국인 피의자 4명을 비롯하여 한국인 국외도피사범 133명을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하였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도박사범들의 범죄 자금 규모는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 제5장 | 국제공조수사 관련 문제점 및 한계 : 필리핀

제1절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필리핀 경찰의 협력도

1. 필리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의 적극성

필리핀 경찰을 상대로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의지 수준을 알아보고자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을 설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필리핀 현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필리핀 경찰관들의 인터뷰 내용⁴¹⁾을 바탕으로 추론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공조수사의 전문성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필리핀의 수사 수준을 감안할 때 필리핀 경찰이 외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거의 없어 보였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한 세부의 경우 코리안 데스크가 운영된 지 4년째에 접어들어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을 비롯하여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에 근무 중인 경찰주재관과 협업을 진행해 왔다. 다만, 대부분의 공조수사의 유형이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유형(인터폴 수배자 입국시 이민청 발견, 현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후 한국 수배 사실 확인, 한국 수배자의 자수)이다. 이는 사실상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수배자 검거라기보다는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 방점을 둔 공조인 것이다. 이외에, 사실상 한국 경찰의 사법권이 필리핀내 미치지 않은 만큼 한국 경찰과 합동 작전 등을 펼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 발생시 이는 필리핀 수사기관 용인 하에 한국의 수사 전문가를 필리핀 현지에 파견하여 필리핀 경찰의 현장 감식,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지원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볼 때 필리핀 경찰의 수사 전문성은 한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국제공조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코리안데스크에 운영되고 있는 CIDG는 한국의 광역수사대와 같은 곳으로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41) 연구를 진행하였던 세부의 경우 세부 지역을 총괄하는 PRO7(우리나라의 지방경찰청)과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된 CIDG(우리나라의 광역수사대와 같은 곳이나 지방경찰청 소속이 아닌 별도 조직)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CIDG는 한인을 상대로한 강력사건 발생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국외도피사범의 소재 등을 발견해오면 사실상 검거해주는 역할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 있어서 국제공조수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필리핀 국제공조수사 담당자의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진다.

두 번째, 국제공조수사의 적법성 준수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함정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현지에서는 함정수사는 물론 셋업 수사⁴²⁾를 통해 인터폴 수배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용의자를 검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 체류중인 한국 수배자의 검거를 요청받은 필리핀 경찰은 해당 수배자가 적법한 비자 등을 통해 체류중일 경우에 단순히 한국 수배 사실만으로는 이를 검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한국 경찰도 필리핀 현지에서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경찰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형사사법공조 절차,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경미한 현지법 위반으로 당해 수배자를 검거 후 추방 형식으로 국내 송환을 진행하기 한다. 이는 사실상 셋업 수사에이나 수배자의 신속한 송환을 위한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세 번째, 국제공조수사에 있어서 경찰관의 적극성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필리핀의 수사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여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해결 및 치안 유지도 버거워보였다. 세부 지역에 국한된 상황이지만 세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만도 한 해에 40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살인사건을 해결한 숫자는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웠으나 인터뷰 결과 및 사법 현실을 감안할 때 많지 않아 보였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사명감이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그동안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경찰주재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 이들의 협조를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아 보인다. 또한, 한국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들로부터 수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수사 협조가 마냥 불편하거나 귀찮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42) 셋업(set-up) 범죄 : 경찰 등 부패한 공권력이 결탁해 무고한 외국인을 범죄 용의자로 몰아 금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 여행객의 가방에 실탄, 마약 등을 넣어 용의자로 몰라 금품을 요구하기도 함
셋업(set-up) 수사 : 강학상 용어는 아니나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로 특정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반된 행동을 미리 설정해두고 이를 검거 및 수사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

2. 필리핀 경찰의 부패인식 수준(뇌물, 수사 과정에서 첩보 유출 등)

본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부분은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질문에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교류를 한 다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필리핀은 2016년 5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급여가 인상되었고, 이후 부패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필리핀 경찰에 대한 급여 인상 및 대통령의 강력 경고에 힘입어 외형상 부패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필리핀 경찰관들의 자평이다. 물론 이 부분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필리핀 경찰이 유독 부패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필리핀 전 영역에 걸쳐서 만연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필리핀의 부패는 부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생계형 범죄에 가깝다. 1일 최저 임금이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⁴³⁾ 가운데 소비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 필리핀 현지인들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금식한 빈부격차가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고려하면, 필리핀의 부정부패는 어찌 보면 당연해보이기도 경찰의 부패도 이러한 사회 현상의 한 부분일 것이다. 필리핀 경찰관에게 한국인 수배자를 잡아달라는 한국 경찰의 협조요청은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못 잡아도 그만”인 것이다. 사실 그들에게는 한국인 수배자를 잡는 것보다 각종 수사나 단속 과정에서 받게 되는 뇌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⁴⁴⁾ 물론 모든 필리핀 경찰관이 부패하고 사명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터뷰 대상자 모두 뇌물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고,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모든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듯 하였다. 또한,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 모두 소액의 뇌물에 대한 죄책감 등은 없어 보였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43) 필리핀은 지역별로 하루 최저 임금이 상이, 마닐라는 502페소, 세부는 386페소 등(2019년 기준)

44) 통상 교통 규칙 위반시 교통 경찰 등에게 300~500페소를 주고 처벌을 면함. 이는 사실상 일일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임

사실 필리핀 경찰관 가운데 돈을 받아보지 않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경찰관이 다른 직업에 비해 돈도 잘 벌고(?) 해서 필리핀에서는 경찰이라는 직업이 매우 인기가 높다. 급여 수준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이 나라에서 경찰이면 못 하는 게 없다. 한국 경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는 경찰이 최고다. 경찰의 명령에 저항하면 총으로 쏘도 누가하나 뭐라 할 수 없다. 대통령도 총을 쏘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알다시피 교도소에 범죄자가 넘쳐난다. 교도소가 모든 죄인을 다 수용할 수도 없다. 정말로 나쁜 짓을 한 놈만 교도소를 보내도 이 정도다. 실형 범인을 잡아 법원에서 구속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돈을 써서 보석으로 대부분 나온다. 돈 있는 사람은... 최근에 필리핀 경찰관을 때려 체포된 한국인도 피해 경찰관도 합의를 보고 바로 보석으로 나왔다. 벌금이 2천인가 3천 페소 나왔을 것이다. 한국 돈으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들어보면 그 금액은 매우 싸 거라고 알고 있다. 어차피 그렇게 보석으로 나올 사람한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몇 천 페소 뜯어내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모르겠다. 물론 우리도 나름의 사명감도 있다. 개중에는 그런 사명감도 없는 경찰관이 있지만. 최소한 나는 아니다. (세부시 경찰관)

이러한 가정 하에 필리핀에 주재하는 경찰주재관 및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필리핀 경찰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한국 경찰의 첩보 등이 필리핀 경찰과의 공조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필리핀 경찰관들이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는 어렵지 않았다. 필리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 해결도 제대도 못하는 있고, 필리핀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없는 국가에서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은 명쾌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였다. 한국에서 치안 교류를 통해 순찰차, 오토바이 등을 지원해주고 코리안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도 의외로 대답은 명료하였다. “한국의 필요에 의해 치안교류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물적 지원이 이뤄진 것” 이라는 반응이었다. 사실 필리핀 현지 치안 수준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답변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필리핀에 한국 사람이 많이 와있고 여행도 많이 온다.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필리핀 경찰의 관심이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순찰차 등을 지원해 준 것이다.(만다웨이 경찰관)

제2절 필리핀 거주 한국인의 필리핀 경찰에 대한 신뢰도

1. 필리핀(세부) 경찰의 부패 정도

필리핀 경찰의 부패인식 수준에 상응하게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경찰의 부패 정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방법의 한계로 본 조사 또한 필리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를 방식을 채택하였다.

먼저, “필리핀 경찰로부터 금품을 요구받거나, 금품을 제공해본 사실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인터뷰 대상자 모두가 “본인이 직접 필리핀 경찰관에게 금품을 준 적이 있다. 또는 주변인이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다” 고 답하였다. 대부분 교통규칙 위반이 주된 원인이나 일부는 영업행위 과정에서 수반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무마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모두 금품 제공을 뇌물죄 등의 불법행위로 인식하기 보다는 필리핀 현지 생활 과정에서 부득이 수반되는 일종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향을 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 교민들은 “필리핀은 돈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라고 공통되게 정의하고 있다. 오히려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은 이러한 필리핀의 사회현상에 적응하여 이를 이용하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 시절 우리나라 경제도 교통단속 과정에서 돈을 받고 그러지 않았나. 아마 필리핀도 경제성장을 하고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 부정부패 또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재는 생활을 위해 부득이하게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필리핀에서는 돈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사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슨 허가든 다 받을 수 있다. 죄를 저질러도 돈만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해도 필리핀에서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 유가족과 합의를 보면 된다. 그 합의금도 기 백만원이면 된다. 그 합의금이면 나머지 가족들이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참으로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다.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 많은 이방인에 불과하다. 비록 내가 돈이 없더라도 한국인은 돈 많은 외국인일 뿐이다. 불법행위를 봐주고 뇌물을 받아가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급행료를 요구하든 이 모든 것이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함이다. 이 돈을 받는다고 이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세부 지역 한인회 관계자)

2. 필리핀(세부) 치안에 대한 체감 안전도

필리핀은 지역에 따라 안전 정도가 다르다.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 만큼 각 섬마다 문화도 다르고 생활방식도 다르다. 무인도는 물론이거니와 인구가 몇백명에 불과한 섬이 있는가 하면 마닐라처럼 몇 천만 명이 거주하는 섬도 있다. 하지만 필리핀을 싸잡아 안전 정도를 물어본다면 다들 ‘안전하지 않는 나라’ 라고 평가를 할 것이다. 필리핀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조차 무서운 나라라고 정의를 한다. 이는 필리핀에는 불법 총기가 많다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나라이다. 특히 본 연구를 진행한 세부는 관광업이 주된 생계 수단이고 전세계의 유학생들까지 모인 곳이다.

그렇다하면 세부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체감안전도는 어떠할까? 세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세부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동안 발생한 한국인을 상대로 살인사건도 금전에 얽힌 원한관계에 의한 것으로 필리핀인이 아닌 한국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건이 체감안전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관되게 필리핀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특별하게 자존심에 상처만 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교민들은 일관되게 셋업 범죄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공통되게 말하고 있다. 자칫 불법무기나 마약 소지 등의 중범죄로 셋업(set-up)되어 인신 구속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셋업(set-up) 범죄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등장하면서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하여 한인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셋업 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염두하고 공항 입출입시나, 경찰관들이 접근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여행객들 가방에 실탄을 넣어 불법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금품을 강탈하기 하는데. 이럴 때에는 절대로 실탄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자기도 모르게 해당 실탄으로 손으로 만져버리면 자신의 지문이 묻어 버리기 때문에 해당 실탄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겨도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셋업 범죄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바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대사관 및 한인회에서는 한동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다. (세부 한인회 관계자)

3. 셋업 범죄 주요 사례

가. 일명 ‘지익주 사건’ (PD수첩 중심)⁴⁶⁾⁴⁷⁾

2016.10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는 사업가 지 모씨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경찰에 연행된 후 마닐라 소재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 안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지 모씨의 가족은 피의자들의 몸 값 요구에 1억 2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의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 모씨의 사체를 화장하였고, 유골을 경찰청사 화장실에 버렸다. 필리핀 경찰이 경찰청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필리핀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급기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 모씨의 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범인들의 머리를 한국에 보내겠다”며 엄정한 처벌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이 3년이 지나도

46) 2019.9.17. MBC 'PD수첩(1210회) "사라진 남편, 그는 왜 표적이 되었나"

16) 2019.9.22. 오마이뉴스, "필리핀 경찰이 살인하고 시신까지..." 분노한 PD의 결심

록 1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심지어 올해는 단 한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지 모씨의 아내와 한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방청하기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필리핀의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 모씨를 납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이 증거로 존재함에도 3년째 1심 판결도 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소극적 외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또한, 외교부에서는 필리핀 경찰에 의한 사건인 만큼 지 모씨의 유족들이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⁴⁸⁾, 이는 필리핀 사법체계에 대한 외교부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필리핀의 법률 체계상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등과 같은 손해배상 제도는 없어 사실상 지 모씨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2019년 9월 ‘지익주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MBC ‘PD수첩’의 김동희 피디를 인터뷰한 기사 전문을 소개함으로써 ‘지익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 및 필리핀 법률 체계상 한계 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한다.

2019.9.22. 오마이뉴스, “필리핀 경찰이 살인하고 시신까지...” 분노한 PD의 결심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략) 이렇게 큰 사건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은 ‘마사렙’이에요.“

2016년 10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남편을 잃은 최경진 씨의 말이다. 마사렙이란 ‘맛있다’란 의미란다. 즉 한국 사람은 건드리면 돈도 나오고 아무 말도 안 하니 건드려도 된다는 의미란다.

48) 2017.1.17. SBS 뉴스, ‘필리핀 경찰관들이 한인 살해... 증거인멸 위해 시신 화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96410

지난 17일 MBC <PD수첩>에서는 '사라진 남편, 그는 왜 표적이 되었나'가 방송되었다. 이 방송에서는 2016년 10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채 유족 동의 없이 화장되어 화장실 변기에 버려진 지익주씨와 그 사건을 추적하는 지씨의 아내인 최경진 씨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외교부가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자국민 보호에 힘써 주길 바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2740>)에 글도 올라왔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19일 서울 상암 MBC 사옥에서 이 사건을 취재한 김동희 PD를 만났다. 다음은 김 PD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17일 방송된 <PD수첩> '사라진 남편, 그는 왜 표적이 되었나'를 연출하셨잖아요.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방송이 끝났는데도 숙제가 아직 덜 끝났다는 생각에 흥분하지 않은 느낌인데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사건이 좀 더 공론화돼서 새로운 대책도 나오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랐는데, 생각보다 조용해요. 지금은 정치적인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관심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2016년 10월에 발생했는데, 그때도 촛불 정국으로 마찬가지로 상황이었어요. 필리핀에서는 사건의 반향이 컸고 반성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조용히 묻혔죠. 저는 취재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 방송이 이후의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 많이 해봤지만, PD님 같은 반응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제가 2016년에 다른 일로 필리핀에 취재를 갔을 때 알게 된 거라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전쟁이 한창이던 때여서 관련 취재를 갔었어요. 그 당시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을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경찰청 홀에서 추모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추모식이 바로 지익주 씨의 추모식이었죠. 그때 처참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제가 그 문제를 취재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짝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후 다 해결이 됐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유족 혼자 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3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분한테 듣게 됐죠. 우연이 몇 번 겹치면 운명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경찰이 사건을 조직하고 은폐

- 2016년 처음 필리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느낌이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했어요. 필리핀 경찰들이 셋업 범죄를 저지른다고 들어 봤어도 무고한 사람을 경찰청에 데리고 와서 살해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익주 씨도 아마. 차가 경찰청에 들어갔을 때 안심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어요. 지익주씨가 살해된 주차장은 외진 공간이 아니라 경찰청 본관에서 바로 앞에 있어요. 본관 게이트에서 정말 얼마 안 떨어진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경찰들이 대담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걸 보고 조직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 방송에 고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고문하다 죽은 건 아닌가요?

“어떤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살해 동기가 뭔지, 누가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범인들은 서로를 살인범이라고 지목하고요. 필리핀 검찰이 채택한 범인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들은 지익주 씨의 얼굴에 테이프를 코만 남기고 다 감았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와이어로 목을 감았는데 남은 와이어를 돌려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살해 의도가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항해서 지익주 씨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고문을 받았다는 말은 아마 팔과 목에 있는 상처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인들 외에 유일하게 시신을 본 장례식장 직원들이 보기에 이상한 시신이었다는 거죠. 필리핀 로컬 지역에 한국인 시신이 보통 자연사한 시신, 사고 시신 혹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시신 정도가 일반적인데 목 졸린 흔적이 있는 시신은 범죄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유족 동의도 안 받고 화장해서 번기에 버렸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해하기 어렵죠. 범인들의 지시를 받은 장례식장 직원들이 사망 확인서를 조작하고 친인척을 사칭해 빠른 화장을 요구하니 해준 거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죠. 지금도 이 사건의 키가 뭐냐면 시신이 없다는 점이에요. 시신이 없는 살인을 증명하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인들이 시신을 불태워 없애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심지어 재판정에서 둠라오의 변호사가 최경진 씨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대요. 되게 잔인하지만, 할 말이 없는 질문이지요.”

- 최경진씨가 하는 말이 올라가면 필리핀 전체가 붕괴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죠?

“최 씨는 이 이야기를 경찰 내부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에서

인지하고 있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일부 경찰들이 돈을 노리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고위직까지 연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필리핀 경찰이나 국가 기관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며, 전체가 부패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요.”

- 경찰이 범죄 조직이 아닐까 하네요.

“신념을 가진 훌륭한 경찰관이 많이 계시니 필리핀 경찰 전체가 범죄 조직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이 내부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방송에는 경찰만 나왔죠. 그러나 수수료 받고 경찰과 셋업을 저지르는 한국인 헌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실제로 같이 많은 작업을 한 곳은 NBI라는 조직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필리핀의 FBI예요. 이 NBI라는 곳의 팀장급 간부와 한국인 헌터가 주로 셋업을 같이 하는 사이였대요. 생각해 보세요. 타깃을 정하고 납치를 하거나 덮치려면 감시도 해야 되고, 미행도 해야 하고, 인건비가 들잖아요. 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계획은 고위급 상관에게 최종 허가를 받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급하고 이런 작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위급이 역였다는 건 조직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필리핀 수사하는 한 곳 중에 그런 곳하고 일을 줄곧 해왔다고 한국인이 스스로 밝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따르면 경찰에도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죠.”

피해자가 직접 사건 조사

- 경찰이 지익주씨 집에 들어가 돈을 뜯어내려다 안 되니 지씨를 데려와 죽인 거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이 사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아주 많아요. 왜 지익주씨냐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왜 납치 당일 바로 죽였냐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몸값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고, 연루된 고위층이 누구냐도 밝혀지지 않았죠.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다 보니 꼬리자르기식으로 사건을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산타 이사벨을 만나셨는데 자기는 행동 대장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행동 대장이었던 것도 부인해요. 납치, 살해를 일절 안 했다고 해요. 다만 지익주 씨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옮겼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필리핀 경찰은 산타 이사벨이 행동대장이고 실제로 살인을 실행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 최경진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답담하시더라고요. 놀란 게 뭐였냐면 물증을 확보한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최경진씨 본인이라는 거였어요. 최경진씨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실질적으로 혼자 노력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 과정에서 대사관, 경찰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 충격이었죠.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심지어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것도 경찰한테 들은 게 아니라 사설탐정이 알려준 거예요.

은행에서 범인들의 CCTV 화면을 준 것도 최경진 씨가 빌어서였거든요. 그것도 은행에 사정하고 협상해서 두 달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누가 데리고 가서 죽었는지 연루된 사람이 있고, 대사관이 뭘 안 했다 등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최경진씨의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얘기를 꺼내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뭘 하나 부탁하는 것도 되게 죄송했지요. 방송으로 해보고 싶다는 제안도 참 어렵게 드린 거고 사실 얼굴 공개부탁도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 돌아가신 곳까지 같이 가자는 것도 어려운 말이죠. 최경진씨가 대단하다고 느낀 건 당연히 하겠다고 의연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심지어 두테르테 대통령까지 3번 만났잖아요. 3번 만났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돌아가신 곳에 가고 싶지 않아도 다시 간 거고요.”

- 세월호참사 때 국가는 없었다는 말을 국민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지익주, 최경진씨 부부 일을 보면서 해외 교민에겐 여전히 국가가 없는 것 같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사관이든 영사든 뭘 안 한 건 아니에요. 영사 조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위해 조력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는 법이에요. 막상 보면 우리 대사관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통역이 명단을 제공한다거나,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건데, 영사 한 명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가 없지는 않았지만 제 역할을 못 해 준 거예요. 안타까워요.”

- 마지막에 최경진 씨가 한국인은 '마사렙' 즉 건드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말이 씁쓸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충격적이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도 나죠.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자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들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교민들 말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대사관은 비자나 발급해주고 하는 곳이지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필리핀 사람들도 저기는 그래도 별 탈이 없다 싶어 타깃을 삼기가 좋은 거죠. 그래

서 '마사렙 코리안'을 만들었다는 건데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하고 있어서 는 안 되는 일이죠.“

- 방송에 못 담은 내용이 있나요?

“많아요. 아까 경찰에 납치 전담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높은 분이 계세요. 당시 수사 책임자죠. 그분도 납치 살해 경력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 사건 자체가 기각됐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기각이 됐다는 건 무죄 이런 게 아니라 증인이 부족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거나 이걸 소송을 건 사람이 사라졌다거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원인으로 사건이 없어졌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백하는 대가로 면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그분이 형사 책임자로 잘 나가고 계셨어요. 납치 비즈니스가 부업이라는 얘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 못 넣었죠.“

-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낀 점 많죠. 사법 주권이 있는 나라니까 필리핀에게 범인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해결된 사례는 아예 없진 않아요. 몇 년 전 필리핀 이민국에서 교민들의 사업장을 급습해서 돈을 부정하게 뜯어내는 사건이 있었대요. 교민들 사이에서 여기서 살지 말아야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때 영사님이 '여기 필리핀 사람들 비자 안 내주겠다. 내 선에서 안 한다'라고 하셨대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난리가 났대요. 당국이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식으로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풀지 못 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쉬운 거죠.”

- 시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최경진씨 사건이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든 죄가 있든 없는 경찰에게 죽임당해서 번기에 뿌려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해결에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를 재판을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런 걸 개인이 해야 하는 일인가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필리핀은 국가 대상 소송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만약 경찰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 국가 상대 민사소송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필리핀 노동자가 진짜 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필리핀 노동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필리핀 대사관에서 와서 그 사람 구출하고 우리나라 상대로 소송했어요. 정부에서 손해 배상했죠. 근데 우리 피해자는 필리핀 정부에 소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그런 법이 없기에. 그럼 개인은 뭘 해야 하나요? 이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일명 ‘백운모 선교사’ 사건

2018년 5월에 18년간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던 백 모 선교사가 마닐라 근교 안티폴로시에서 필리핀 경찰에 의하여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백 모 선교사는 불법 무기 및 폭발물 소지, 폭발물 제조·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126일간의 구금 끝에 2018년 10월경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에 백 모 선교사의 부인이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⁴⁹⁾



이 사건은 내막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백 모 선교사는 자신의 소속된 교회가 인근의 학교(필리핀 국제대학교)와 소유권 분쟁을 빚어오다가 승소함에 따라, 2017년 12월 학교 측에 시설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사설보안요원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면서 발달된 것이다. 이러한 요청 이후에 필리핀 현지 경찰은 사설보안요원들을 불법무기 소지 등을 이유로 체포하였고, 백 모 선교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속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셋업범죄’ 로 볼 수 있는 근거는 ① 총기가 발견된 곳이 백 모 선교사의 사무실이 아닌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필리핀 국제대학교였

4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3112>

다는 점이다. 필리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곳은 필리핀 국제대학교 인데 정작 수색을 한 곳은 선교법인 건물이고 그곳에서 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되었다고 필리핀 경찰은 주장하고 있다. ② 필리핀 경찰은 백 모 선교사에게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명령(우편)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체포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백 모 선교사는 출석요구서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 필리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각종 서류에 백 모 선교사의 주소가 필리핀 국제대학교로 되어 있던 점도 ‘셋업범죄’ 임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③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백 모 선교사가 거주하는 안티폴로시가 아닌 그곳으로부터 2시간 이상 떨어진 라구나 라는 곳이라는 점도 셋업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필리핀 대사관이 백 선교사가 체포된 다음 날(2018.5.31.)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영사면회를 실시하였고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사관에서는 백 모 선교사가 구금된 경찰서 관계자를 면담한 뒤 관련 서류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으며 필리핀 경찰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⁵⁰⁾

그러나 주필리핀대사관의 노력에 힘입어 백 모 선교사는 구금된지 126일 만인 2018.10.2.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2019년 현재까지도 백 모 선교사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사실상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채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기 사유로는 검사 측 증인의 불출석, 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첩보 등으로 재판이 연기되고 있어 1심 재판이 언제나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재판 결과와 관련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필리핀 법원은 심리 절차를 통하여 백 모 선교사가 불법무기를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석 허가를 한 만큼 사실상 무죄 선고로 해석하는 것이 필리핀 법조계의 일관된 해석이다.

필리핀의 형사 재판 절차는 매우 오래 걸린다. 판사의 숫자는 적는데 사건은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형사 재판은 민사 소송에 우선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많은 이유로 휴정이 되거나 여타 이유로 지연된다. 예를 들면 법원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허

50) 2018.8.3. KBS 뉴스, “구금된 선교사 도와달라” 국민청원에 靑 답변…“지원에 최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9172&ref=A>

위 신고만 들어와도 휴징이다. 위 사건의 경우는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추가로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재판은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필리핀의 사법 현실상 어쩔 수 없다. (UC School of law 교수)

제3절 경찰주재관(영사)와 코리안데스크의 운영상 문제점

1. 경찰주재관(영사)의 역할 및 한계

경찰주재관은 치안분야 정책질 및 치안정보 수집, 주재국 경찰기관 등과 치안분야 협력 및 외교활동 지원, 우리국민 범죄피해 예방 등 재외국민 보호, 국제공조 수사 및 영사활동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사·수사·정보·경비 등 경찰분야 전문 지식, 조사 기법 및 민원인 응대기법을 요한다. 또한, 형법·형소법·국제법 등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국제공조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며 상황분석, 첩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렇게 선발된 경찰주재관은 주재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처리 및 예방 활동을 비롯하여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및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각종 협력 업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경찰주재관 또한 대사관(영사관)에 근무중인 외교관 중 한명에 불과하고 주재국내에서 사법권이 없는 만큼 전적으로 주재국 수사기관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주재관의 역량에 따라 주재국의 수사협조 정도가 좌우되기도 한다. 특히, 정보 부서 경험이 풍부한 경찰주재관이라면 주재국 수사기관 등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며 다가적인 네트워크를 짧은 기간내에 구축하여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경력이 부족한 경찰주재관이라면 주재국 수사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이 쉽지 않아 그 역할 수행이 다소 미흡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먼저,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전적으로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

생하기라도 하면 담당 영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난 여론이 집중되기 한다. 특히,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겪게 되는 각종 불편 사항까지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해결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역할은 각종 사건·사고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과 주재국 관계기관을 도와주는 것임에도 재외국민들은 그 이상의 조치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재국의 형사사법 절차나 행정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영사로서 헌신을 하고 있음에도 재외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영사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역할을 바로 알리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세부의 경우 사건·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한다. 교민을 비롯하여 관광객, 심지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세부로 도피하여 불법체류 중인 국민까지 포함하면 보호대상자가 많다. 또한 필리핀의 형사사법체제나 행정행위가 우리나라의 70~8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필리핀에서 한국 수준에 버금가는 각종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재국 실정에 맞게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면 외교관이 해 주는게 뭐냐라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거나 욕부터 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될 일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민원인들은 그 이상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 줄 수도 없음에도 못해주면 성질을 낸다. (필리핀 주재 사건·사고 담당 영사)

두 번째로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국제공조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복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장치 부재도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필리핀의 경우 불법총기가 만연해 있고, 청부살인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각종 수사 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습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경우, 사실상 주재국에서 정보·수사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주재국에서 영사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각종 사건·사고 해결위하여 주재국의 수사기관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이러한 역할을 유관 기관 출입 및 협조체계 구축, 첩보 수집 등을 주로 하는

경찰 정보관의 업무와 유사성을 띠고 있는 만큼 영사 선발시 유관 경력을 고려함으로써 영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역할 및 한계

필리핀에 주재하고 있는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주재국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 발생시 수사 공조 및 국외도피사범 송환업무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는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만큼 이들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파견함으로써 현지 교민들은 한인들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리핀 전역에 걸쳐 6명의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경찰청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된 만큼 교민사회와 필리핀 경찰청 간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교민들의 경우 한국과 필리핀 양국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한국 경찰관이 필리핀에 상주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건 상담 및 진행사항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좋다고 한다. 또한 외교관 신분의 경찰 영사와 달리 한국 경찰관 신분으로 필리핀 경찰청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는 사실이 필리핀 지역에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들의 범죄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국외도피사범(수배자)들에 대한 위하 효과 및 교민들간에 국내법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사건·사고 담당 영사 이상으로 각종 상담 업무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는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직무 영역 밖의 업무이다. 그럼에도 교민들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나 영사 등 대사관 직원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공무원’으로 동일시하고 있기에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도 자연스럽게 피해자 보호 및 각종 상담 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들 모두 공히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교민 사회에서는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교민 사회 내에서의 치안 유지자 및 상담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

죄피해자 지원 등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또한 사건·사고 영사와 마찬가지로 주재국내에서 수사권이 없는 만큼 그 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주재국 수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주재관과 달리 외사·수사 근무 경력자만 선발하고 있어 사건·사고 담당 영사에 준하는 코리안데스크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정보 부서 경력자 등 타 부서 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⁵¹⁾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담당관의 직무)

1. 주재국 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살인·납치·강도 등) 수사 공조
2.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3. 주재국 내 한국인 도피사범 송환업무 지원
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5. 기타 경찰청 지시사항



CIDG(코리안 데스크가 설치·운영중)



CIDG 조직도

51)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선발 기준은 후술, 선발 배점표를 보면 경찰 총경력과 외사·수사 경력만을 배점화. 과연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현지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현지 수사기관과 한국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경력만 점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도 상존

제4절 「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의 효과 분석

1. 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 사업 현황

2007년 한국-필리핀 양국은 치안협력 업무 협정을 체결한 이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한국 경찰청에서는 필리핀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발생 및 범죄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에 ‘코리안 데스크’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및 한국인 대상 강력 사건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한국-필리핀 양국 경찰청장 회담 정례화⁵²⁾, 코리안 데스크 추가 파견⁵³⁾ 및 필리핀 경찰의 수사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⁵⁴⁾을 추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정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 한국-필리핀 경찰청장 회담 의제(2017.11.20.)⁵⁵⁾ ◀

- 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협력 강화
- ②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KOICA 협력, 치안분야 ODA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 ③ 국제성 범죄 수사 및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협력
- ④ 대한민국-필리핀 경찰협력회의 정례 개최를 위한 업무 협정 개정

특히, 필리핀 경찰의 수사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은 한국 경찰청에서 한국 국제협력단(KOICA⁵⁶⁾)과 협업하여, 필리핀 경찰에 수사기자재 확충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 치안시스템을 전수함으로써 우리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종이다.

52) 2007년 한-필리핀 양국이 치안협력 업무 협정을 체결한 이후 4차례 경찰청장 회담 및 매년 국장급 실무 회의 개최 / 한국 경찰청장의 필리핀 방문: 2012.1월, 2015.11월 / 필리핀 경찰청장의 방한: 2013.9월, 2017.11월

53) 2019년, 마닐라·카비테·양헬레스·바기오·세부 지역에 코리안 데스크 운영(한국 경찰관 6명 근무)

54) PROJECT사업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행정역량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종으로 개도국의 행정개선 등 특정 목표를 위해 건물·장비 등 물적 수단 제공과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의 인적 수단을 결합하여 다년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사업

55) 2017.11.17. 경찰청 브리핑 자료

56)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이의 일환으로, 2017년 필리핀 경찰청에 한국형 순찰차 130대를 지원하는 등 2020년까지 660만 달러(약 79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필리핀 경찰의 수사역량강화 프로젝트 사업 내용 ◀

- ① 필리핀 경찰에 대한 교육 및 자문 : 과학수사, 범죄예방, 과학수사, 치안컨설팅(범죄예방), 사이버범죄 수사 등 5개 분야
- ② 수사기자재 및 장비 지원 : 수사·순찰차량, 컴퓨터·카메라, 수사시스템 등 지원
- ③ 필리핀 경찰 초청 연수 : 실무자/관리자/고위급 방한 초청연수사업 및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의 치안시스템 등 소개



필리핀 경찰청에 순찰차 지원(2018.5.29)

※ 자료 출처 : 구글⁵⁷⁾

2. 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평가

가. 필리핀 거주 교민들의 평가

앞서, 코리안데스크 운영에 대해서는 현지 교민들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필리핀 수사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교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57) https://www.google.co.kr/search?biw=1829&bih=916&tbm=isch&sa=1&ei=UrKJXenvI4-6wAP907hI&q=pnp%2C+hyundai&oq=pnp%2C+hyundai&gs_l=img.3...22673.25058..25604...0.0..0.126.794.0j7.....0....1..gws-wiz-img.....0i8i30j0i24j0i19j0i7i30j0i7i10i30j0i7i5i30j0i8i7i30.5nNZsMtiFM4&ved=0ahUKEwjp4PKp5ejkAhUPHXAKHf0pDgkQ4dUDCA&uact=5#spf=1569305197943

우선, 현지 교민들은 한국에서 필리핀 경찰에 물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교민들은 필리핀의 경제·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물적 지원 없이는 필리핀 경찰의 협조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순찰차, 오토바이 등은 필리핀 치안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필리핀 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구매하여 운영 중에 있는 순찰차 및 오토바이는 마닐라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도시에는 많이 없고, 있더라도 매우 낡은 다목적 차량에 불과하다.

본 연구를 진행한 세부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지원한 순찰차(승용차, 승합차) 및 오토바이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으나, 필리핀 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구매한 순찰 차량은 거의 보질 못하였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한국에서 지원한 순찰차는 측면에 “K-1, K-2...” 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물론 자세히 보면 한국 경찰청 참수리 마크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지원한 순찰차(SUV)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J-1, J-2...” 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필리핀에 많은 원조를 해왔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에서 순찰차 등을 지원해 준 사실은 필리핀 현지 교민 신문(무가지)을 통해 접해서 알고 있었으나, 어떤 차량이 한국에서 지원해준 순찰차인지 유심히 본 적은 없다고 한다. 이는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에서 순찰차량을 지원해 준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본바 조사 대상자 모두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원해준 순찰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K’ 는 Korea를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해준다음 해당 차량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본 것 같기도 하다.” 라고 공히 답변하였다. 그 다음 일본에서 순찰차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 “일본은 우리를 오랫동안 도와줬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필리핀인들에게 한국보다 일본에 더 우호적일 것 이라고 추측해보는 바이다.

교민 신문에 한국에서 필리핀 경찰청에 순찰차 몇 대 보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총영사님과 세부 경찰청 관계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그래서 한국에서 필리핀을 지

원해 증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필리핀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그런 건 못 본건 거 같다. 그리고 경찰차가 보이면 괜히 무서워서 빨리 지나만 갔지 순찰에서 뭐라고 표시되어있는지 자세히 본 적이 없다. 다음에 지나갈 때 한번 제대로 봐봐야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K-25라고 적혀 있는 건만 봐서는 이게 Korea의 K라는 것을 추정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현대자동차 소나타)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 이게 원조 받은 순찰차인데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라고 생각해보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지원해준 차량임을 쉽게 알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한국인들은 자세히 보면 한국 경찰 마크도 있고 하니깐 알 수 있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 지원 순찰차(K-25호)



일본 지원 순찰차(J-70)



한국 지원 오토바이(K-72)



Cebu Korea News(CKN)

나. 필리핀 경찰의 평가

필리핀 경찰들은 한국 경찰의 각종 수사 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물론 개인적인 호기심과 과학수사 분야에서의 발전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필리핀의 치안 인프라를 감안하면 한국 경찰이 제공한 ‘과학수사 키트’ 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부 지역을 예로 들면, 주요 교차로 등에도 신호등이 많지 않다. 씨툼(Citom)이라고 불리는 시티 교통경찰과 그 보조원들을 시티 주요 곳곳에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 교민들은 “씨툼(citom)이 없을 때는 차가 막히지 않는데 씨툼만 나타나면 차가 막힌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세부에서 막상 생활을 해 보니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었다. 세부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차량의 급속한 증가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도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속도도 매우 늦다. 이런 가운데 세부의 각 시티에서는 씨툼을 활용하여 교통관리를 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교통 흐름은 시간대·장소별 교통량이 달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교통 관리가 가능하다. 인간의 직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세부에서는 사실상 모든 주요 도로에 수 백명의 씨툼을 배치하여 교통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적인 조치로, 특정 지역의 정체를 해소하면 다른 곳에 정체가 발생하게 되는 연쇄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일시적 조치이며 오히려 이러한 조치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세부에서 교통 신호등을 많이 볼 수 없는 이유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씨툼(citom)을 배치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치안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필리핀 경찰청에 과학수사 키트보다 치안 유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수사키트는 소모성 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필리핀 경찰이 수사에 설령 활용을 하더라도 소모성 장비의 보충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필리핀 경찰들도 공감하고 있다. 수사역량 강화도 좋으나 경찰 장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양국의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하였다. 2000년 이전 한국의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는지 돌이켜 보면 해답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현장 경찰관들은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3단봉이 무겁고 잘 펴지지 않아 대부분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사

실만 생각해봐도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쉬운 것이다.

물론,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리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자국민 보호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 경찰의 수사 수준이 올라가면 과연 현지 교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것인가 라는 물음에 회의적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경찰)에서 ‘Philippines Friendly’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지 교민의 권익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필리핀 경찰청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일 것이다.

한국에서 순찰차, 오토바이 등과 같은 기본 순찰 장비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반기는 일이다. 사실 교통 경찰이 출동을 나갈 때도 대부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아주 멋진 오토바이를 제공해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는 경찰관은 아주 멋있어 보인다.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 등을 한다. 과학수사 장비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다. 몇 년 전에 한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 발생시 한국의 과학수사 수준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필리핀 경찰청에 과학수사 키트를 준 것도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 키트를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지 의구심부터 든다. 일단 필리핀 경찰관이 과학수사 키트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모품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워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다. 아시겠지만 필리핀에서는 ‘no stock’이 일상화되어 있고, 물건이 언제 들어 오냐고 물어보아도 다들 모른다고 답변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소모품 공급이 원활하다는 가정 하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필리핀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거나 이런 인식이 없다. 사건이 발생하면 출동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수사하고 없으면 주변에 탐문을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기도 심지어 연말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에는 검시관도 휴가를 간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검시관이 미리 관련 서류에 자기 서명을 다 해둔다. 그래서 변사사건 같은 경우에 검시관이 없어도 그 서류만으로 담당 형사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게 필리핀의 현실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실인 것이다. (PRO 7 경찰관)

다. 국내 여론

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국내여론은 좋지 않다. 특히, 2016년 10월 필리핀 경찰청 안에서 한국인 사업가 지 모씨가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경찰에 연행된 후 마닐라 소재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 안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일

명 ‘지익주 사건’ 58)59)이후 필리핀 경찰청에 대한 지원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필리핀 경찰청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만큼 무작정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교민보호 및 한국 경찰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보다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필리핀 경찰 부패 심각…한국경찰, 지원사업 재고해야”(연합뉴스, 2018.05.29.)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경찰 부패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필리핀에 순찰차 등 경찰 장비를 지원하는 경찰청의 필리핀 수사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필리핀 경찰이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인권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에 마약사범 즉결처형권을 부여해 올해 3월 기준 4천여명이 목숨을 잃는 “초법적인 살인”이 이뤄졌고,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발포 등 강제진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협력대상국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KOICA가 과연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남용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한국 경찰의 주요 개혁과제이기도 하다”며 “경찰이 공권력 남용 부분에서의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 협력국의 인권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후략)

58) 2019.9.17. MBC ‘PD수첩(1210회) “사라진 남편, 그는 왜 표적이 되었나”

16) 2019.9.22. 오마이뉴스, “필리핀 경찰이 살인하고 시신까지...” 분노한 PD의 결심

| 제6장 |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1절 협력국에 대한 지원사업 방식의 다양화

1. 교육 중심의 지원 사업 제안

현재 필리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사업은 물적 지원 중심이다. 물론 순찰차, 오토바이 등 물적 지원 외에도 과학수사 교육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필리핀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국 경찰에 견주어, 지역경찰·형사·교통 활동 등의 기본적인 치안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필리핀 경찰들에게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이 과연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가장 기초적인 치안 행정이 미흡한 필리핀 경찰들에게 과학수사 활동은 언감생심이고 설령 해당 교육을 받았더라도 보수 교육 등의 부재로 그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방법, 탐문 수사 요령 및 공직자 자세 등을 교육해주는 것이 보다 실효적 이라고 생각한다.

2. 한국 경찰의 가시적 치안활동(순찰) 추진(이론적 배경 및 사례)

가. 가시적 경찰활동과 체감치안과의 상관관계

가시적 경찰활동과 체감치안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기태 외(2018)⁶⁰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가시적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시적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가시적 경찰활동의 증가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검증하였다. 다만, 가시적 경찰활동이 체감

60) 박기태 외 2명, “외국인 밀집지역의 가시적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연구 제18권 제4호(통권 제56호), 2018년. 174면 / 2018년도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No.2018R1A5A7023490)

안전 인식을 높이고 체감안전 인식이 높아질 경우에 범죄두려움이 낮아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체감안전 인식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이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효과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활동이 범죄의 해결(범죄 감소)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찰활동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해외 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교류협정약정 등)가 필요하다.⁶¹⁾ 특히, 협력국내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재외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실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크로아티아 경찰청의 ‘안전한 관광철 프로젝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어서 서술하기로 한다.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경찰청훈령 제71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외국의 경찰 또는 외국 경찰 유관기관간 교류협력약정 체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이 외국의 경찰, 외국 경찰 유관기관 (이하 “상대기관”이라 한다)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이하 “약정체결”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약정체결 제외) 우리나라 경찰기관이 외국기관으로부터 교류협력 약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약정 체결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61) 외국 경찰과의 교류협력 약정 체결 현황

1. 경찰청-중국공안부 ‘대한민국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96. 11)
2. 경찰청-일본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과 일본국 경찰청간의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회’(2001. 3)
3. 경찰청-인도네시아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과 인도네시아 경찰청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서’(2004. 8)
4. 경찰청-베트남공안부 ‘대한민국 경찰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공안부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약정서’(2005. 5)
5. 경찰청-싱가포르경찰청 ‘대한민국경찰청과 싱가포르경찰청간 국제범죄척결 및 경찰협력증진에 관한 협력약정’(2007. 5)
6. 경찰청-멕시코 공공안전부 ‘대한민국 경찰청과 멕시코 공공안전부간 국제성 범죄척결 및 경찰협력증진에 관한 협력약정’(2010. 3)
7. 경찰청-이탈리아 내무부 ‘대한민국 경찰청과 이탈리아 내무부간의 경찰협력 양해각서’(2010. 5)

제4조 (타당성 검토) 경찰기관의 장이 약정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보호 등 국익기여 여부 2. 정보교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상호 발전기여 여부 3. 상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 여부

제5조 (약정체결 협의) ① 경찰기관의 장은 약정체결을 위해 상대기관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인사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약정체결 협의단계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약정체결 승인) ① 경찰기관의 장이 상대기관과 약정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약정체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약정체결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약정체결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대기관의 개황, 약정체결 추진경위, 교류협력 기본계획 2. 약정체결의 기대효과 3. 약정체결 예정일자, 장소 및 체결방법 4.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검토 자료

나. 크로아티아 경찰청의 ‘안전한 관광철 프로젝트’

크로아티아는 관광산업이 국민총생산의 18%수준으로 관광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에 크로아티아는 안전한 관광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안전한 관광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국의 경찰관들과 함께 합동순찰을 하는 제도를 운영⁶²⁾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국내 방송프로그램(‘꽃보다 누나’)에서 크로아티아가 소개된 이후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최근 5년간 10배 이상 증가(매년 40만명 이상)하였으며, 2019년 크로아티아 경찰청 요청으로 한국 경찰도 크로아티아에서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현지 경찰과 합동순찰을 하게 되었다.⁶³⁾

62) 독일·프랑스·중국 등 18개국의 외국 경찰관이 크로아티아 경찰과 합동근무를 실시

63) 2019.4.11. 한국-크로아티아 경찰청, 관광치안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장 소 : 자그레이브, 두브로부니크, 스플리트 3개 지역(총6명 파견)
- 기 간 : 2019.7.1~8.31(2개월)
- 업 무 : 한국인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현지 경찰과 합동 순찰
한국인 관광객 의사소통 지원 및 현지 치안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국민보호 업무 지원
현지 및 합동순찰 참여국 경찰관들과의 교류협력 및 자료 수집



다. 치안한류와 연계한 주요 관광지내 가시적 치안 활동 추진

한국인이 주로 찾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K-pop, K-drama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경찰활동도 치안한류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크로아티아 사례를 참고하여 각 국가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국 경찰을 시기별로 파견함으로써 자국민 보호 활동은 물론 치안에 있어서도 한류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2절 코리안데스크의 전문성 제고 및 확대

1.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의 선발 기준 및 자격 요건에 검토 필요

2019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선발 기준⁶⁴⁾은 다음과 같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선발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로 구분된다. 서류 심사는 ①외국어 능력, ②유관기관 경력, ③총경력을 점수화하여 합산을 하게 된다. 먼저, ① 외국어 능력의 경우 50점 만점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의뢰하여 인터뷰를 통해 외국어 능력을 검증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외국어 능력은 상중하 그룹으로 나뉘게 되며 그 점수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⁶⁵⁾ ②유관기관 경력의 경우 외사·수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배점화하고 있으며 총 배점은 30점이다. 해당 분야 1년 이상 기본점수 16.5점부터 10년 이상이면 30점 만점을 받게 된다. 다만, 유관기관 경력 점수를 1년 단위로 1.5점씩 추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게 된 이유나 근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유관기관 경력에도 외사·수사 분야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코리안데스크를 첫 선발할 당시(2012년)에는 외사·수사 분야 외에도 정보 분야 경력도 유관기관 경력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험이 있는 경찰관으로 전해 들었을 뿐 관련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 유관 기관 경력에서 정보 등의 경력이 제외되었는지, 정보 분야 경력 외에 다른 분야 경력도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주재국 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살인·납치·강도 등) 수사 공조를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추상적으로나마 외사·수사 역량을 갖춰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주재국내에서 수사권한이 없어 주재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인 것이다. 이는 2019년 5월 코리안데스크 선발 과정을 위한 면접 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인 경찰청 외사국장의 질문에서도 알 수 있었다.⁶⁶⁾

64) 경찰청 외사국 코리안데스크 선발 기준(2019년)

65) 경찰청 외사국 코리안데스크 선발 담당자 면담 결과(2019.5월)

66) 2019.5.16. 코리안데스크 선발을 위한 외사국 면접시 외사국장 발언 내용을 요지 중심으로 구성(면접 참가자로부터 전언)

<외사국장 질문>

필리핀 교민 A가 찾아와 B한테 사기 당했다고 코리안데스크를 찾아와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B가 찾아와 A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오히려 A를 처벌해 달라고 한다. 이 경우에 코리안데스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사국장 답변>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코리안데스크는 주재국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자칫 외교문제로 일으킬 수도 있고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업무 특성상 수사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기간을 수사 경력으로 인정하여 유관경력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수사에 보조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일시적 파견 형식으로 기획 수사 등에 참여하였음에도 이를 수사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유관 경력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⁶⁷⁾

그리고 ③총 경력 점수도 총 배점은 20점이다. 3년 이상 9.5점부터 17년 이상 20점 만점에 이르기까지 2년당 1.5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배점 기준을 설정하였는지 알기 어려웠다. 유관기관 경력은 10년 이상이면 만점이고, 총 경력은 17년 이상이 만점인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배점 기준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다음 면접심사이다. 면접심사는 총 배점 50점으로 ①직무수행능력 평가 50점, ②태도 50점으로 구분된다. ①직무수행능력은 전문지식 25점, 문제해결 능력 25점으로 구성된다. ②태도는 국가관·사명감 25점, 외교역량 2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재국에서 한국 경찰을 대표하는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인 만큼 직무수행능력과 태도 등을 면접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면접 심사의 배점이 서류 심사와 동일하게 100점이라는 것은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면접에 의해 선발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67) 범죄정보를 담당한 정보부서 경찰관이 자신이 입수한 범죄 첩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당 기획수사에 업무지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2019년 코리안데스크 선발 당시 해당 지원자가 수사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인정)

면접 심사의 배점이 다소 높다 라고 생각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인원의 2배수를 확정하고, 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I. 서류심사(객관요소 평가)

외국어능력 배점(50점)

○ 원어민 인터뷰를 통해 문법·발음·어휘력·이해력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의뢰)

유관경력 배점(30점)

기간 분야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외사,수사	16.5	18	19.5	21	22.5	24	25.5	27	28.5	30

총 경력 배점(20점)

구 분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이상	13년 이상	15년 이상	17년 이상
근무기간	9.5	11	12.5	14	15.5	17	18.5	20

※ 경찰배명일 기준, 원서접수 마감일(7.25.) 현재까지 총 근무경력

II. 적격심사(면접 평가)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기준(100점)

구분 등급	합계 (100점)	직무수행능력(50점)		태도 등(50점)		비고
		전문지식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	국가관·사명감 (25점)	외교 역량 (25점)	
1등급		21~25	21~25	21~25	21~25	
2등급		16~20	16~20	16~20	16~20	
3등급		11~15	11~15	11~15	11~15	
4등급		6~10	6~10	6~10	6~10	
5등급		1~5	1~5	1~5	1~5	
총 점						

※ 심사위원이 면접에서 질의를 통해 평가, 항목·등급별 취득 점수를 합산

그런데 2020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선발시에는 이러한 기준이 변경되었다. 총경력, 외사·수사 경력 점수 및 총점 등이 변경되었으며 이렇게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였는지 등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번 변경을 통해 외사·수사경력이 없는 경찰관은 사실상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에 지원조차 하기 힘들어 졌다. 왜냐하면 2005년경 경찰 조직에 수사경과가 신설된 이래 일반 경과 경찰관들은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가 없어졌고 수사부서 근무 경력이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선발시 경력점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사실상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수사경과 출신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불합리한 선발 기준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역할이 수사 경력자만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주재국에서 수사권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한 주재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을 고려할 때 정보 부서 경력 등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지녀야 할 요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2020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선발 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연 무슨 기준과 근거로 수사경력자의 배점 기준을 강화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경찰주재관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수사 경력 외에도 정보 경력자 등을 우대하기도 한다. 그런데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경찰청 외사국의 밀실 행정과 외사국 출신을 우선 선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2020년 코리안데스크 선발 결과를 보면 경찰청 외사국 출신이 선발된 사실 또한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⁶⁸⁾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담당관의 직무)

1. 주재국 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살인·납치·강도 등) 수사 공조
2.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3. 주재국 내 한국인 도피사범 송환업무 지원
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5. 기타 경찰청 지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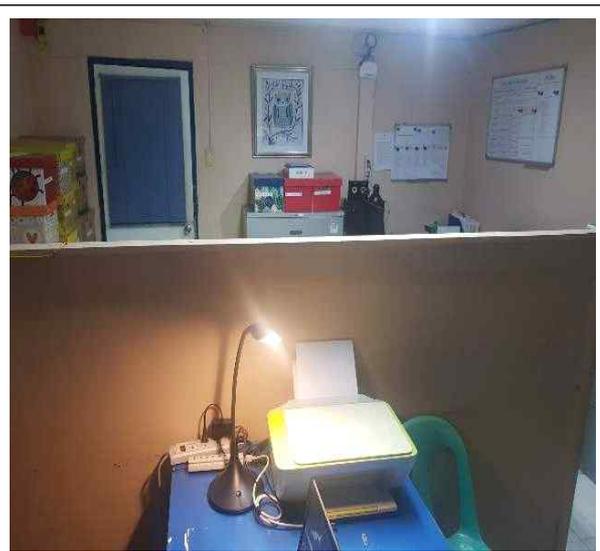
68) 대상자 명단 게재는 생략기로 함

2. 코리안데스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본 연구를 진행한 세부 지역에 설치된 코리안데스크의 사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세부 CIDG(Criminal Investigation and Detection Group) 내에 3평여 남짓한 사무실 한 칸에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책상이 있다. 이 사무실에는 CIDG 소속 2명의 형사가 함께 하는데 한인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 격의 형사가 아니고, 그저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해당 사무실은 창문하나 없는 창고와 같은 분위기이며, 이 곳에 설치된 에어컨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사무실 운영비로 설치할 만큼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외근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 사무실내에 상주할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한국에서 필리핀 경찰청에 660만 달러(790억여원)를 지원해주면 사무 공간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필리핀 경찰청 내에서 코리안데스크의 위상 및 교민들의 상담 창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별도의 사무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코리안데스크 설치에만 급급한 인상이었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후에도 필리핀 경찰청과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코리안데스크가 CIDG 내에 설치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자리

3. 코리안데스크의 임무 및 역할 재협의

코리안데스크에 대한 현지 교민들의 기대는 크다. 이미 한국 경찰을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한 것만으로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현재 코리안데스크는 수배자 송환 중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각종 사건·사건 관련한 상담이나 피해자 보호는 그 업무 범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지 교민들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에게 각종 사건·사고나 분쟁 등을 상담 받고 싶어 한다. 교민들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한국 경찰의 대표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외도피 사범 송환 중심의 코리안데스크의 직무 범위⁶⁹⁾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민보호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한국 순찰차를 타고 교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근무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리핀 지역 내에 교민의 위상 및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필리핀 경찰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4. 코리안데스크 운영 국가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안한류와 연계하여 주요 관광지내 한국 경찰을 파견하여 가시적 치안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필리핀 외에도 최근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을 중심으로 코리안데스크 설치 또는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미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을 추진하고, 현지 교민 보호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동남아 국가 지역에 외교부 소속 경찰주재관 및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확대 파견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9)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담당관의 직무)

1. 주재국 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살인·납치·강도 등) 수사 공조
2.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3. 주재국 내 한국인 도피사범 송환업무 지원
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5. 기타 경찰청 지시사항

| 제7장 | 결 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범죄자(피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피의자)가 2,963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을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엄정한 범집행을 요구하는 여론과 맞물려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국내송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범죄자(피의자)들이 주로 도피하는 국가인 필리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여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여 교민보호 및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엄정한 범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송환 및 국제공조수사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필리핀에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의 형사절차는 우리나라처럼 투명하거나 공정하지도 않다는 점에 착안해야한다는 것이다. 굳이 경우에 따라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이나 국제공조수사의 일련의 과정을 외교절차나 국제법 및 필리핀 형사 절차의 준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필리핀에서는 ‘법대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서 사건·사고 담당 영사 및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융통성’ 있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피로감 호소 등을 이유로 자수 의사를 밝힌 피의자 있다고 가정하자. 이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 도중에 필리핀 현지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상태(pending)라고 하면 이 피의자는 필리핀에서 모든 재판 절차를 마칠 때까지 출국을 할 수 없다. 필리핀 재판 절차는 지연되기 십상이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럴 경우 피의자의 국내송환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법의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인 자국민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영사 등의 조력을 받아 pending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며, 이때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의 범죄 실태 등 관련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각종 통계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외교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e-Consul(영사민원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외도피사범의 증가, 재외국민들의 영사 조력 수요 증가에 불구하고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수는 수년째 제자리이다. 특히 해외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영사의 경우는 기껏해야 31개국(48개 공관)에 55명에 불과하여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다. 따라서 경찰 영사 업무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 주재관의 파견국 확대 및 파견 경찰관의 숫자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외교관 신분외 경찰 영사 외에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같은 형태의 한국 경찰의 해외 파견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외국민들은 외교관에 대한 불신과 대사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실망을 해온 게 사실이다. 또한, 외교관(영사)과 재외국민간의 거리감은 상존한다. 그러나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한국 경찰 신분으로 필리핀 경찰청 내에 상주하고 있다. 이런 만큼 재외국민들은 영사보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보다 친근하고 각종 상담 등 조력이 용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 차원에서 한국인 범죄 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선발시 그 역할이 주재국의 수사기관 등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선발 자격을 수사·외사 분야 경력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보 분야 경력자 등도 선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치안교류를 위하여 해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 형태에 있어서 다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수사역량 강화 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본바 있다. 순찰차, 오토바이 등 차량 지원은 필리핀의 치안 여건을 감안하여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학수사키트와 지원에 있어서는 필리핀의 치안 수준 상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삼단봉 등 기본 장구 지원, 112 시스템 전수, 범죄 예방 관련 직무 교육 등이 필리핀 치안 여건에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듯 해외지원 사업 방식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송환 및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적 방안을 조금이나마 도출해보았다. 다만, 본 연구는 필리핀의 현실을 기초로 진행하였던 만큼 다른 국가에 적용함에 있어서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제공조수사 등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개별적인 교류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피주 기식 지원’이 아닌 ‘Give and Take’의 방식으로 그 사업 내용 또한 해당 국가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실효성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석구, 2012,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1. 필리핀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중세, 2014, 재외국민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5(4), 283-297.
- 김 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 연구 제24권 제1호, 2016, 221.
- 박미숙·추지현·황태정, 2017,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 박기태 외 2명, 외국인 밀집지역의 가시적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연구 제18권 제4호(통권 제56호), 2018년, 174.
- 박재현, 2016,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법, 비교법학, 27.
- 외교부, 2017, 필리핀 개황
- 윤민우, 2014, 해외에서의 한국인 대상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3(2), 231-270.
- 이재삼, 2011, 한국과 필리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 헌법연구, 9.
- 장준오·이완수·고성혜, 2011, 동남아시아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 필리핀 과 태국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국외문헌

-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Korea-Philippines Extradition Treaty (한국-필리핀 범죄인 인도 조약)

<붙임> 한국-필리핀 범죄인 인도 조약

Korea-Philippines Extradition Treaty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gned at Seoul May 25, 1993

Entered into force November 30, 1996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make more effective the co-oper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by concluding a treaty on the reciprocal extradition of offend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ligation to Extradite

Each Contracting Party agrees to extradite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ny person who is wanted for prosecution, trial or for the imposition or execution of a sentence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for an extraditable offence.

Article 2 Extraditable Offenc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extraditable offences are offences however described which ar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by deprivation of liberty for a maximum period of at least one year or by a more severe penalty.

2. Where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sentenced to deprivation of liberty by a court of the Requesting Party for any extraditable offence,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only if a period of at least six (6) months in the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3.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ce is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 (a) it shall not matter wheth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lace the conduct constituting the offence within the same category of offence or denominate the offence by the same terminology;
- (b) the totality of the conduct alleged against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nd it shall not matter whether,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ce differ.

4. Where extradition of a person is sought for an offence against a law relating to taxation, customs duties, foreign exchange control or other revenue matter, extradition may not be refused on the ground that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impose the same kind of tax or duty or does not contain a tax, duty, customs, or exchange regulation of the same kind as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5. Where the offence has been commit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provides for the punishment of an offence committed outside its territory in similar circumstances.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so provide, the Requested Party may, in its discretion, grant extradition.

6. Extradition may be gran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n respect of an offence provided that:

(a) it was an offence in the Requesting Party at the time of the conduct constituting the offence; and

(b) the conduct alleged would, if it had taken place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have constituted an offence against the law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7. 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number of offences, each of which is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but some of which do not meet the other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Party may grant extradition for such offences provided that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for at least one extraditable offence.

Article 3

Mandatory Refusal of Extradition

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under this Treaty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when the Requested Party determines that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a political offence. Reference to a political offence shall not include the following offences:

(a) the taking or attempted taking of the life or an attack on the person of a Head of State or Head of Government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b)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the obligation to establish jurisdiction or extradite by reason of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they are both parties;

(c) an offence relating to genocide and terrorism; and

(d) an offence involving kidnapping, abduction or any form of unlawful detention, including the taking of a hostage;

2. when the person sought is being proceeded against or has been tried and discharged or pun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for the offence for which his extradition is requested;

3. when the prosecution or the punishment for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would be barred by reasons prescribed under the law of either Contracting Party including a law relating to the lapse of time; and

4. when the Requested Party has well-founded reasons to suppose tha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has been presented with a view to persecuting or punishing the person sought, by reason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The provision of this paragraph, however, shall not apply to the offenc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b) and (c)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4
Discretionary Refusal of Extradition

Extradition may be refused under this Treaty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when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sought is regar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s having been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in its territory;
2. when the offence carries the death penalty under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unless that Party undertakes that the death penalty will not be sought, or if a sentence of death is imposed it will not be carried out;
3. when the person sought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convicted in a third State for the sam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nd, if convicted, the sentence imposed has been fully enforced or is no longer enforceable; and
4. when, in exceptional cases, the Requested Party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and th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Party deems that, because of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the person sought, the extraditi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humanitarian considerations.

Article 5
Postponed or Temporary Surrender

1. When the person sought is being proceeded against or is serving a sentence in the Requested Party for an offence other than that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the Requested Party may surrender the person sought or postpone surrender until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s or the servic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sentence imposed. The Requested Party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any postponement.

2.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where a person has been found extraditable, the Requested Party may temporarily surrender the person sought for the purposes of prosecution to the Reques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 person who is returned to the Requested Party following a temporary surrender may be finally surrendered to serve any sentenc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rticle 6

Extradition of Nationals

1. N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bound to deliver up its own nationals under this Treaty but the competent authority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power to deliver them up if, in its discretion, it considers that it is proper to do so.

2. Where a Contracting Party refuses extradi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t may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y in order that proceedings for the prosecution of the person in respect of all or any of the offences for which extradition has been sought may be taken if that is considered appropriate. That Party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any action taken and the outcome of any prosecution. Nationality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rticle 7
Channel of Communication

Requests for extradition and any subsequent correspondence shall be communicated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Article 8
Extradition Procedure and Required Documents

1. The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made in writing. All documents submitt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authentic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2. The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documents which describe the identity and, if possible, the nationality and location of the person sought;

(b) a statement of the laws describing the essential elements and the designation of the offence;

(c) a statement of the laws describing the penalty to be imposed for the offence; and

(d) a statement of the laws relating to the time limit on the prosecution or the execution of penalty for the offence.

3. Whe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who has not yet been found guilty, it shall be accompanied by:

(a) a copy of the warrant of arrest issued by a judge or other competent officer of the Requesting Party;

(b) 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person sought is the person to whom the warrant of arrest refers; and

(c) a statement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duct alleged to constitute the offence such as would provid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person sought has committed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4. Whe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found guilty, it shall be accompanied by:

(a) a copy of the relevant judgment rendered by a court of the Requesting Party;

(b) 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person sought is the person found guilty; and

(c) a statement of the conduct constituting the offence for which the person was found guilty.

5. All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by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9

Additional Information

1.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is not 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to enable extradition to be granted, that Party may request that additional information be furnished within such time as it specifies.

2. I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is under arrest and the additional information furnished is not 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or is not received within the time specified, the person may be released from custody. Such release shall not preclude the Requesting

Party from making another request for the extradition of the person.

3. Where the person is released from custod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the Requested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arty as soon as practicable.

Article 10

Authentication of Supporting Documents

1. A document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accompanies a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admitted in evidence, if authenticated, in any extradition proceedings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2. A document is authentic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if it purports to be signed or sealed or certified by a competent officer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1

Provisional Arrest

1. In case of urgency,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the provisional arrest of the person sought pending the presentation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application may be transmitted by post or telegraph or by any other means affording a record in writing.

2. The application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person sought, a statement that extradition is to be requested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a statement of the existence of the relevant documents

mentioned in paragraph 3 or paragraph 4 of Article 8 authorizing the apprehension of the person, a statement of the penalty that can be imposed or has been imposed for the offence and, if requested by the Requested Party, a concise statement of the conduct alleged to constitute the offence.

3. On receipt of such applica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secure the arrest of the person claimed an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promptly notified of the result of its request.

4. The person arrested shall be set at liberty if the Requesting Party fails to presen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accompanied by the documents specified in Article 8, within forty-five (45) days from the date of arre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prevent the institution of proceedings with a view to extraditing the person sought if the request is subsequently received.

Article 12

Simplified Extradition

When a person sought advises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that the person consents in writing to extradi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xpedite the extradition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its laws.

Article 13

Conflicting Requests

1. Where requests are received from two or more States for the

extradition of the same person, either for the same offence or for different offences, the Requested Party shall determine to which of those States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and shall notify those States of its decision.

2 In determining to which State a person is to be extradited, the Requested Party shall have regard to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and, in particular, to:

- (a) the relative seriousness of those offences, if the requests relate to different offences;
- (b) the time and place of commission of each offence;
- (c) the respective dates of the requests;
- (d) the nationality of the person sought; and
- (e) the habitual place of residence of the person.

Article 14

Surrender

1. The Requested Party shall, as soon as 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has been made, communicate that decision to the Requesting Part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complete or partial refusal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2. The Requested Party shall agree on the time and place of surrender of the person sought to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move the person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as the Requested Party specifies and, if the person is not removed within that period, the Requested Party may set that person at liberty and may refuse extradition

for the same offence.

4. If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prevent a Contracting Party from surrendering or removing the person to be extradited, it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two Contracting Parties shall mutually decide upon a new date of surrender or removal, and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apply.

5. Where extradition is granted under this Trea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extradited is brought to trial expeditiously.

Article 15 Surrender of Property

1.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subject to the rights of third parties, which shall be duly respected, all property foun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that has been acquir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or may be required as evidence shall,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if extradition is granted.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above-mentioned property shall,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to the Requesting Party even if the extradition cannot be carried out owing to the death or escape of the person sought.

3. Where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or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o require, any property so surrendered shall be returned to the Requested Party free of charge if that Party so requests.

Article 16

Rule of Speciality

1. A person who has been extradited under this Treaty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or tried for any offence committed before extradition other than that for which extradition has been granted, nor extradited to a third State for any offence,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n that person has left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after extradition and has voluntarily returned to it;

(b) when that person has not left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within forty-five(45) days after being free to do so; or

(c) when the Requested Party consents. A request for consent shall be submitted, accompanied by the documents mentioned in Article 8 and a record of any statement made by the extradited person in respect of the offence concerned. Consent may be given when the offence for which it is requested is extradit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offences committed after the extradition.

3. When the description of the offence charged is altered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the extradited person shall only be proceeded against or sentenced in so far as the offence under its new description is shown by its constituent elements to be an offence which is:

(a) based on substantially the same facts contained in the extradition request and its supporting documents; and

(b) punishable by the same maximum penalty as, or a lesser maximum penalty than, the offence for which that person was extradited.

Article 17

Transit

1.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the right to transport through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 person surrendered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y a third State shall be granted on request in writing mad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2. The request may be refused if reasons of public order are opposed to the transit.
3. Permission for the transit of a person surrendered shall include authorization for accompanying officials to hold that person in custody or request and obtain assistance from authorities in the Contracting Party of transit in maintaining custody.
4. Where a person is being held in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erson is being held may direct that the person be released if transportation is not continued within a reasonable time.
5. Authorization for transit shall not be required when air transport is to be used and no landing is scheduled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ransit. If an unscheduled landing occur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it may requir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furnish a request for transit as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Party of transit shall detain the person to be transported until the transportation is continued provided that the request is received within ninety-six (96) hours of the unscheduled landing.

Article 18

Expense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ake all necessary arrangements for and meet the cost of any proceedings arising ou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and shall otherwise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bear the expenses incurred in its territory in the arrest o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and in the maintenance of the person in custody until surrender to a person nominated by the Requesting Party.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the expenses incurred in removing the person extradi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19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rticle 20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have been fulfilled.

2. This Treaty shall also apply to any offence specified in Article 2 committed before this Treaty enters into force.

3.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at any time by giving six (6) month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5th day of May 1993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REPUBLIC OF KOREA